

2003
국제장애인교류대회

동아시아(한국, 일본, 홍콩)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의 동향과 전망



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KOREA FEDERATION OF ORGANIZATIONS OF THE DISABLED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1 금산빌딩 1004호
전화 : 02)784-3501~2 팩스 : 02)784-3504
<http://www.kofod.or.kr> E-mail:kofod@kofod.or.kr

동아시아(한국·일본·홍콩)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의 동향과 전망

Md1.28

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KOREA FEDERATION OF ORGANIZATIONS OF THE DISABLED

2003
국제장애인교류대회

동아시아(한국, 일본, 홍콩)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의 동향과 전망



사단
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KOREA FEDERATION OF ORGANIZATIONS OF THE DISABLED

목 차

주제발표 1 일본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을 위한 법안 설명과 과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왜 필요한가	3
히가시 도시히로 변호사 (일본변호사연합회 장애인차별금지법조사연구위원)	
일본 장애인차별금지법(요강안)	25
장애인정책연구전국실행위원회 '장애인차별금지법' 작업팀	
장애인차별금지법(보조설명)	50
장애인정책연구전국실행위원회내 '장애인차별금지법' 작업팀	

주제발표 2 홍콩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과 법제정효과 그리고 사회적 비용

홍콩 장애인차별금지법과 법제정 효과 그리고 사회적 비용	73
요셉 콕 키ن 교수 (홍콩시립대)	
참고문헌 (부록)	88

주제발표 3 한국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의 과제와 전망

한국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의 과제와 전망	111
박종운 변호사 (장추련 법제정위원장)	
주제토론1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한국정부의 역할과 정책방향	135
박 찬 형 (장애인정책과장)	
주제토론2 – 한국의 장애지원제도와 장애인차별금지법	141
유 동 철 (동의대 사회복지학과, 열린네트워크 운영위원)	

주제발표 4 독일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동향과 시사점

독일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동향과 시사점	155
남 용 현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 연구원)	

주제발표 1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일본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범안

설명과 과제

-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왜 필요한가 ~

히가시 도시히로 변호사

일본변호사연합회 장애인차별금지법조사연구위원

일본전국자립생활협의회 인권위원장

1. 들어가는 글

- 세계의 움직임과 일본의 현황-

일본에서, 헌법의 평등조항과는 별개로, 장애를 가진 사람이 차별 받지 않을 권리를 인정하는 법률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최근에 와서야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논의가 왕성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세계에서는, 1990년 미국의 장애를 가진 미국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s : ADA)이 성립되었고, 그 후 오스트리아, 영국 등의 많은 국가에서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었다.

지난 2000년, 미국 워싱턴 디씨에서 미국의 장애를 가진 미국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s : ADA)제정 후 10년간의 변화를 검증하기 위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관한 국제회의가 열렸다. 장애인당사자의 자립생활 운동을 기반으로 하는 장애인당사자의 인권단체인 DREDF가 주최를 하고, 그 요청에 응한 약 50 여개국의 장애인당사자와 전문가가 모였다. 이 회의를

통해, 차별금지 관한 어떠한 형태로든 법규정을 가진 나라가 40여개 국가 이상이며, 장애를 가진 미국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s : ADA) 타입의 장애인차별금지법을 가진 국가가 이미 20여 개국 이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한편, 국제장애인의 해 이후, 유엔(UN)을 무대로 장애를 가진 사람의 권리를 둘러싼 활발한 논의가 시작했다. 그중에도 이태리나 스웨덴은, 차별금지조약의 체결을 제창했다. 그러나 아동권리조약 등 다른 인권조약의 경우와는 달리 유엔(UN)에서 다수의 찬성을 얻지는 못했다. 그 후 유엔(UN) 차원으로는 법적으로는 구속력을 가지지 못하는 가이드 라인 성격의 「기회 평등화에 관한 기준규칙」 제정에 끝났다. 그러나 지난 2년 전부터 다시 유엔(UN) 차원의 장애인권리조약을 요구하는 국제적인 움직임이 강해지고 있다.

한편, 일본에서도, 국제장애인의 해 이후, 장애인 관련 새로운 법률의 제정과 종래의 법률의 개정, 제도의 변혁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종래의 고용촉진법 뿐만이 아니라, 개정된 장애인기본법도, 새롭게 제정된 하트빌법이나 교통바리아후리법도, 내용적으로는 장애를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국가와 관련사업 등에 대한 시책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종래의 보호법의 틀을 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장애를 가진 사람을 주체로 한 권리를 인정하는 권리법은 아직 일본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이는 일본이 얼마나 인권 후진국인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지금까지 DPI(디피아이 : 장애인인터넷내셔널) 일본회의 등 장애인당사자 단체는 ADA가 제정되었을 때부터 일본 내에서 차별금지법의 필요성을 주장해왔지만 별로 사회에 설득력을 갖지는 못했다.

그러나 최근에, 이러한 상황에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다.

첫째, 2002년에 DPI(디피아이) 세계대회가 삿포로에서 개최되어, 국제적인 내용으로는 권리조약이, 일본 국내적으로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이 큰 테마가 되었다.

둘째, 장애를 가진 사람의 인권상황을 우려한 일본 변호사연합회가 인권옹호위원회를 중심으로 2000년 가을, 나라현에서 인권대회를 열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필요성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개요를 세상에 알리는 기회가 있었다.

셋째, 여당의 하나인 공명당이 미국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s : ADA)을 들어 일본의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넷째, 2001년 8월 31일 유엔(UN)의 사회권규약위원회가, 일본정부에 대해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했다.

이러한 상황 등에 따라 일본 내에서도 점점 공적인 장소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 논의가 활발해졌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결국, 법률 제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이러한 노력은 무시되던가 형식적인 것으로 끝날 위험성이 높다.

2. 차별금지법의 제정의 필요성

- 일본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왜 필요한가? -

(1) 인권보장의 원리

원래, 근대헌법에 있어서 「인권(자유권)」 보장이라는 것은 국가가 자의적으로 국민생활에의 관여를『금지』하는 것과 함께 그것에 대항하는 법적무기로서 「자유권」이라는 권리를 개개의 국민에게 주어, 침해를 받았을 경우, 국민이 그 권리를 사법을 통해 행사하는 것에 의해 자신의 자유로운 활동영역을 확보하는 것을 보장 하는 이념의 원리이다.

따라서, 평등권이 보장된다라는 것은 법이 사전에 국가가 국민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사후에 사법구제가 행해지는 것을 의미하며, 불평등한 대우에

대해서는 개개의 국민이 평등권이라는 법적무기를 가지고 자기실현을 향해 싸움의 수단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2) 헌법규정의 추상성

- 차별 내용의 명확화의 필요 -

일본 헌법 제14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아래 평등하고 인권 신조 성별 사회적 신분 등등에 의해 정치적 경제적 또는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 차별받지 않는다」라 규정되어 있어, 국민이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너무 추상적이며 특히, 장애에 의한 차별에 대해서는 명문화 되어있지 않다.

또, 실제 장애인에 가해지는 일상적인 차별분야는 방대하고, 차별의 내용도 여러 가지 영역에 미친다. 예를 들어 노동, 교육, 교통, 건물, 커뮤니케이션, 사회생활 등의 각 분야에서, 장애인의 차별이란 각각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지 분야별로 차별을 유형화해서 그 분야별로 금지되는 차별의 유형화를 도모하지 않으면 차별을 금지하는 국가나, 차별을 받는 국민이나, 장애를 이유로 개개의 구체적인 문제행위가 벌어졌을 때 차별인가 아닌가 판단하기 매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차별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차별을 유형화해 차별의 내용을 명확화 하지 않으면 안된다. 헌법규정 이외의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새로 만들지 않으면 안되는 그 첫 번째 근거가 바로 이것이다.

(3) 헌법상 차별이 금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국가여야 한다

- 개인간의 차별행위를 금지 할 필요 -

헌법은 국가와 국민의 관계를 규율하는 국가의 기본법이라는 원칙적인 성격상, 헌법상의 국민의 권리는 국가에 대한 것이다. 따라서 헌법상의 인권은 국가에 대해 주장할 수 있는 것이지만, 개인 상호간(사기업은 헌법상 개인이다)의 차별에 대해서는 한 쪽의 개인이 다른 개인에게 헌법상의 인권을 주장

할 수 없다는 원칙적인 문제가 존재한다.

확실히 개인 상호간의 차별 원리는 국가의 기본정책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헌법이 이러한 원칙적인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실제 생활에 있어서 개인 간에 차별을 방지해도 좋다고 할 수는 없다. 판례로 봤을 때, 개인 간에도 헌법의 취지를 간접적으로 적용해 차별이 공공장소와 미풍양속을 해하는 경우, 민법상에서도 위법으로 손해배상을 인정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위법 차원의 차별행위가 너무 좁은 의미로 한정 되어있고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 않는다. 이러한 개인에 의한 차별을 정면에서 법률상 금지하지 않으면 안된다.

(4) 복지입법과 복지정책의 한계

전후 50년 가깝게, 한 세대를 말살했다고 할 수 있는 한센병(나병)환자에 대한 사회정책을 법적으로 지지했던 일본의 「라이예방법」이, 개인의 존엄을 궁극의 목표로 하는 「법 아래의 평등권」이라는 인권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일본의 헌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용되고 유지되어 왔다는 것은, 오늘날 일본 복지의 본질과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보호(복지정책)은, 반드시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법을 통해 알 수 있다.

법률상으로 강제적인 점에서 큰 차이가 있으나, 시설처우의 근거를 부여하는 사회복지법이나 분리교육을 강제하는 학교교육법실행령도, 보호를 근거로, 같은 세대의 인간이 사회체험의 기회와 지역에서 살 권리를 빼앗고 있다. 시설수용을 확실히 하는 역할은 달성할 채 모르나, 결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아닌 것이다.

그러나, 앞에 말한 것과 같이 지역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장애인기본법, 고용촉진법이나 하트빌법, 교통바리아후리법도 장애를 가진 사람 개인에게 어떠한 권리를 부여하는 법률은 아니다.

예를 들면, 고용촉진법의 경우, 100명의 종업원이 있다면 2명 이상까지 장애를 가진 사람을 고용하도록 하는 법률인데, 이 법으로 기업이 장애를 가진

사람을 고용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법은 3명부터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채용을 거부하는 것을 용인, 즉 차별을 용인하는 법률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채용 현장에서 「우리는 더 이상 장애인을 고용 할 자리가 없어요(법적고용율을 넘었기에)」라는 면죄부를 주는 것이다.

장애인의 채용시험부터 거부당했다는 것은 많이 듣는 이야기다. 이것은 「불쌍하니까 사회가 여력이 있는 범위 내에서는 조금 고용하라」는 자혜의 발상으로부터 제정된 복지입법의 한계를 아주 잘 보여준다.

다음으로, 예를 들어 장애인을 고용할 의무가 남아있는 경우에도, 범칙금만 지불하면, 그 회사는 장애인을 채용하는 의무로부터 자유가 된다. 이럴 경우, 거부당한 장애인 이의를 제기하여 제판 등에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방법이나 수단이 없다. 왜냐하면, 이 법률은 의무고용율을 만들어 기업이 장애를 가진 사람을 사회 전체적으로 가능한 장애인을 많이 고용하고자 하는 일종의 사회보장의 제도는 만들었지만, 개개의 장애를 가진 사람이 차별 없이 채용되는 권리(인권)를 부여하고 있지는 못한 것이다. 더욱이 인권이 없다면, 그것이 법적으로 침해받는 것은 성립되지 않기에 사법구제 수단이 준비되어지지 않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ADA에서는 어떠한 장애를 가진 사람이 응모를 하던 장애가 있다는 것만으로 채용을 거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채용을 거부당한 사람은 사법구제를 요구해 제판을 제기 할 권리가 인정되어 있다.

이러한, 현행복지입법은 지역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장애를 가진 개인에게 사법구제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것 이 아니라 하는 것이 세 번째의 근거이다.

(5) 인권구제 시스템의 필요

1) 무상의 법적 지원체계(legal system)의 필요성

인권은 원래 개인의 권리이기에 그 개인이 주장하지 않으면 포기한 것과 마찬가지다. 또한 어떻게 그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본래 개인의 주체성에 맡기는지는 것이다.

그러나, 장애를 가지지 않은 사람조차 사법의 분야에서 형사사건에 있어서는 국선변호나 사선변호, 민사사건에 있어서는 대리인이라는 법 시스템을 받아들이고 있다. 그리고, 그 외의 분야에서도 여러 가지 사회적 지원을 이용하여 법 시스템을 받아들이고 있다. 장애인도 이러한 법체계(법적 시스템)없이는 사실상 자기의 권리주장은 유명무실하다.

변호사의 입장에서도, 인권에 관한 문제의 경우, 시간이나 노동이 소요되는 것에 상응한 보수를 기대할 수 없는 사건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엉거주춤한 태도를 가지고 있다. 성년후견제도의 개정에 의해 변호사도 고령자나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해 점차 관심을 가지게 되어가고 있으나, 그것은 재산관리라는 측면이 강하고 경제력이 없는 장애인에게는 여전히 이용하기 힘든 제도이다. 이러한 상태에서 장애를 가진 사람이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실효성이 있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한편, 예로서 독일의 세화(世話)법에서는 무재력의 경우 국고지변이 규정되어 있어 많은 세화(世話)인이 규정에 의해 고령자나 장애를 가진 사람의 재산관리 뿐만 아니라 권리의 옹호에 힘쓰고 있다. 또 미국에서는 발달장애인법에 의해 설치된 비영리공적인권옹호기관에서 '권리옹호와 보호(Protect and Advocacy'(P&A))를 위해, 발달장애인을 가진 사람의 대리인이 스스로 설치한 주정부도 소송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민간에서도 공익을 목적으로 한 비영리 법률사업소가 무상으로 법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장애를 가진 사람의 공민권의 확충에 대해 많은 공헌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에 있어서도 법무성이 성년후견인제도를 개정할 당시 당시의 후생성은 지역복지권리옹호사업을 시작했으나, 1000엔 전후의 비용징수의 벽에 막혀 거의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더구나 이 제도는 지역용이고 시설입소장애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이용 가능한 법률 시스템이 없다면 권리의 주체자로서 장애를 가진 사람 자신을 역량강화를 하는 것은 극도로 곤란한 것이다.

그래서 인권침해를 받은 장애를 가진 피해자에 대해 무상의 법서비스를 제

공하는 비영리공익법인이 국가의 예산 설치에 의해 설치되어 유지 되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2) 차별금지법의 적정한 실행과 행정구제 기관의 필요성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를 법률상 규정 하였다 해도, 그것이 적정하게 실행되어지고 있는지 감시하는 전문 기관(예를 들어 노동기준감독서)이 없다면, 그림의 띡으로 끝날 위험성이 높다. 또 사법구제는 일반적으로 각각의 비용과 장기의 기간을 요하고 더구나 구제수단이 한정되어 있어 그 차별유형에 응할 수 있는 유연한 해결이라는 점에 한계가 있으므로(예를 들어 손해배상이라는 구제수단만으로는 장래적으로 보았을 때 차별 그 자체를 없앤다는 점에 한계가 있다), 신속하고 차별유형에 응한 유연한 해결이 되도록 행정구제기관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미국, 영국, 오스트리아에는 그러한 기관이 설치되어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

3) 사법구제의 방법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실정법으로 정비되지 않는 한, 사법은 정면으로부터 차별문제와 싸우기는 곤란하다. 그리고 사법의 관계로 특히 문제되어야 할 점은 판결에 있는 원상회복의 수단이다.

미국 법원에는 코몬로와 에크리데(형평법)이 있다. 전자의 구제가 금전배상명령이라면, 후자는 조작, 부조작을 포함해 적극적 시정명령이 있다. 차별을 받은 개인의 최후 구제로는 이 판결수단을 이용한 사법위구제의 수단이 존재한다. 1070년대부터 시작한 미국의 탈시설화에 대한 공소 판결은, 개인적이나 인권침해를 배제하는 것만이 아니고, 행정에 대해 지역에서 자립생활을 지원하도록 하고 그 책무를 인정시킨다.

일본의 기존의 이법에 있어서도, 특별법 등에는 일전의 경우 손해배상이외의 적극적인 시정명령을 인정하는 규정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인권침해에 관해서 이러한 시정을 명령하는 입법상의 근거가 현재의 경우 존재하지 않는다.

또 크拉斯 액션이나 징벌적배상 등이 차별사건의 재발을 방지하는 위해 매우 중요한 무기가 될 수 있으므로 그것들을 포함해서 입법이 검토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인권구제 시스템으로서 새로운 법이 요구 되어지고, 특히,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신설하지 않으면 안된다.

3. 각국의 차별금지법의 유형

장애를 가진 사람의 권리를 지키는 법제에는 크게 나누어 4종류의 유형이 있다. 앞에서 말한 것과 모순 될 수도 있지만, 각각의 유형의 효용성과 문제점을 지적해 보겠다. 또, 어떤 나라가 어떤 법제에 의한 접근을 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음의 페이지의 표를 참고 하길 바란다.

(1) 형사 처벌 등 벌칙으로의 접근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해 차별이나 권리침해에 대해, 형사벌이나 행정벌에 의해 벌칙을 정하는 것. 예를 들어 프랑스는 고용이나 기업활동, 공공서비스에서 장애인을 차별하면 2년 이하의 징벌에 처한다. 이 접근은, 장애인 차별이 강하게 비난받아야 하고 위법성이 강하고 인간의 존엄을 범하는 행위라는 것을 명시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 형벌인 이상 차별자의 고의나 악의가 있을 경우, 주관적인 요소가 범죄의 성립요건으로서 있을 수 있는 점을 주의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의도하지 않은 간접적인 차별을 처벌하는 것은 곤란하다.

(2) 헌법 접근

국가의 근본 법칙인 헌법에 차별금지 규정을 두는 것은 큰 의미를 가지는데, 이로 인해 법제도를 바꾸는 것이 가능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앞에서도 서술 했지만, 헌법법상에, 뉴질랜드의 헌법을 제외하고는, 평등조항에 있어, 「장애」와 「차별」이 정의 되어 있지 않기에 추상적이다. 구체적 권리가 아닌, 목표의 프로그램 규정으로 보여 질 위험이 있다. 또, 국가와 국민의 행위를 규정하는 헌법에서는 개인간의 행위를 규정 할 수 없다.

(3) 민사법 접근

이 접근은 택하는 나라는 다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모든 사적, 시민적으로 사회생활의 면을 총망라해서 차별금지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은 ADA를 가진 미국을 시작해 오스트리아, 캐나다, 영국 등이다. 이 접근은 형벌이나 헌법에서의 규정보다는 내용으로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다. 차별금지의 개념에 대해서도 정의되어 있다. 또 이 접근의 특색은 법 내용의 실현을 위해 수단을 규정하고 있다. 전통적인 재판소에 의한 해결이외의 전국평의회나 위원회 등을 설치했고, 법의 준수상황을 모니터하는 기관을 설치한 경우도 많다.

(4) 사회복지법 접근

사회복지관련법칙에 의한 차별금지규정은 별로 많지 않다. 차별의 문제점을 고치는 정도에 멈춘다. 이 접근은, 건강한 청년남자를 근대시민으로만 인정하고, 그 시민상에 일치하지 않으면 자선이나 은혜의 대상으로 삼는 사회복지관련법의 대상으로, 19세기말 이후의 전통적인 생각에 의한 것이다.

그러나, 이 복지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장애나 질병이 의학적으로 엄밀하게 인정되어지지 않으면 안 되고, 그 대상으로 인정된 경우는 일반의 생활과는 다르게 특별하게 은혜를 받은 복지베이스의 생활을 한다. (3)의 민사적 접근이 인간의 다양성을 전제로 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표 2. 각 국의 장애인 관련 차별금지법의 유형)

차별금지법/ 권리보장법칙	각국의 법제의 현황
법칙에 의한 접근	프랑스, 필란드, 스페인, 톡센브르크, 오스트리아, 홍콩, 모리샤스, 필리핀, 이스라엘, 잔비아, 진바브
헌법규정에 의한 접근	오스트리아, 브라질, 캐나다, 필란드, 피지, 간비아, 가나, 독일,马拉우이, 뉴질란드, 남아프리카, 스위스, 우간다
민사법에 의한 접근	오스트리아, 캐나다, 칠리, 고스타리카, 에디오피아, 프랑스, 가나, 과델말라, 홍콩, 황가리, 독일, 아일란드, 이스라엘, 한국, 마타가라스, 모리샤스,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필리핀, 남아프리카, 스페인, 스리랑카, 스웨덴, 영국, 미국, 잔비아, 진바브

사회복지법에 의한 접근볼리비아, 중국, 코스타리카, 필란드, 파나마, 한국, 스페인, 니카라그아

※ 일본변연인권옹호대회(2001년11월)제1분과회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을 향해)의 조사 보고서에서 발췌

差別禁止法はなぜ必要なのか ～日本の現状と課題～

弁護士・DPI日本會議常任委員 東 俊裕

1. はじめに 一世界の動きと日本の現状

日本において、憲法の平等條項を別とすれば、障害を持つ人が差別を受けない権利を認める法律は未だ存在しない。近年になってやっと、差別禁止法制定への議論が高まってきたという状況である。

しかし、世界では、1990年アメリカでADA（障害を持つアメリカ人法）が成立すると、それ以後、オーストラリア、イギリスなど、多く國で差別禁止法が制定されるようになった。

昨年、ADA制定後の10年間の変化を検証するため、ワシントンDCで差別禁止法に関する国際會議が開かれた。障害当事者の自立生活運動を基盤とする障害当事者の人権団体であるDREDが主催したものであるが、その呼びかけに応じて約50カ国の障害当事者や専門家が集った。そして、その會議では、差別禁止に関する何らかの法規定を持つ國が40カ国以上、ADAタイプの差別禁止法を持つ國が既に20數カ国になっていることが分かったとのことであった。

また、国際障害者年以降、特に國連を舞台として、障害を持つ人の人権を巡って活発な論議がなされ、中でもイタリアやスウェーデンは、差別禁止條約の締結を提唱した。

しかし、子どもの人権條約の場合と異なって、國連の多數の賛成を得るまでには至らず、結局、その成果は、「機会均等化に関する基準規則」という法的には拘束力を持たないガイドラインの制定に終わったものの、これについても2年ほど前から、再び條約化を求める動きが強まっている。

一方、日本でも、国際障害者年以降、多くの新しい法律の制定や從來の法律の改正、制度の変革が行われている。しかし、例えば、從來の雇用促進法だけでなく、改正された障害者基本法も、新しく制定されたハートビル法や交通バリアフリー法にしても、内容的には、障害を持つ人を対象として、國家と関連事業所等に對する施策を規定したものに過ぎず、從來の保護法の枠を越えるものにはなっていない。障害を持つ人を主体とした権利を認める権利法は、依然として日本には存在しないのである。

日本がいかに人権後進國であるか、一目瞭然である。

これまでDPI（障害者インターナショナル）日本會議などの障害当事者団体はADAが制定された頃から差別禁止法の必要性を訴えてきた。しかし、なかなか世論に浸透しなかった。

ところが最近、このような状況に変化が見えてきた。一つは、2002年にDPI世界大會が札幌で開催され、国際的には権利條約、國內的には差別禁止法のそれぞれの制定を大きなテーマとなったこと。2つ目は、障害を持つ人の人権状況を憂慮した日本弁護士連合會が、人権擁護委員會を中心に、この秋奈良縣において人権大會を開き、差別禁止法の必要性と差別禁止法の概要を世に問うことになったこと。3つ目は、与党の一つである公明党がADAを取り上げて差別禁止法の制定の必要性に言及するようになったこと。4つ目は、2001年8月31日、國連の社會權規約委員會が、日本政府に對して差別禁止法の制定を勧告したことなどである。

これらによって、ようやく、公的な場でも差別禁止法の制定論議をなし得る環境が整ってきたと言える。しかしながら、事は始まったばかりである。結局のところ、世論の盛り上がりがなければ、無視されるか、形ばかりのものに終わる危険性が高い。

2' 差別禁止法の制定の必要性

ところで、なぜ差別禁止法が必要なのであろうか。

(1) 人権保障の原理

そもそも、近代憲法における「人権（自由権）」保障とは國家の恣意的な國民生活への關与を『禁止』するとともに、それに對抗しうる法的武器として「自由権」という権利を個々の國民に与え、侵害を受けた場合、國民がその権利を司法を通じて行使することによって、自らの自由な活動領域を確保することを保障する理念・原理であった。

従って、平等権が保障されるということは、法が事前に國家が國民を差別することを禁止し、事後に司法救濟が爲されると云うことを意味し、不平等な扱いに對しては個々の國民が平等権という法的武器をもって、自己實現に向かって戦いうる手段を持っていると云うことを意味する筈である。

しかし、このような憲法の趣旨を、憲法の規定のみで達成するには、限界があるのである。

(2) 憲法規定の抽象性—差別の内容の明確化の必要

日本國憲法14條は、「すべての國民は、法の下に平等であつて人種、信條、性別、社會的身分又は門地により、政治的、經濟的又は社會的關係において差別されない」と規定し、國民が差別を受けない権利を有していることを明らかにしている。

しかし、この規定は第1に、非常に抽象的であつて、しかも、障害に基づく差別については明文上触れられていない。

また、實際には、差別の存在する生活分野は多方面にのぼるうえ、差別の内容も様々な行爲に及ぶ。例えば、労働、教育、交通、建物、コミュニケーション、社會生活等の各分野における差別とは、それぞれいかなるものと言うのか、分野ごとに差別を類型化し、その分野ごとに禁止される差別の類型化を図らなければ、差別を禁止される國家にとっても、差別を受ける國民にとっても、障害を理由とした個々具体的な問題行爲が果たして、差別なのかどうか、見当がつかないと言うことになる。

このように、差別がいかなるものであるか、その類型化を図ることで差別の内容を誰にも明らかなもの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のが、憲法規定以外に差別禁止法を新設しなければならない根據の第1である。

(3) 憲法上、差別が禁止されるのは原則的には國家であること—私人間の差別行為を禁止する必要

憲法は、國家と國民の關係を規律する國家の基本法であるという原則的な性格上、憲法上の國民の権利は國家に向けられたものである。従って、憲法上の人権は國家に對しては主張出来るものであるが、私人間相互（いかに大企業であっても私企業は憲法上私人に過ぎない）の差別においては、一方の私人が他方の私人に憲法上の人権を主張できないと言う原則的な問題が存在する。

確かに、私人間相互の差別の原因は國家の基本政策に起因しているとも言えるが、だからといって、實際の生活における私人間における差別を放置して良いということにはならない。判例は、私人間にも憲法の趣旨を間接的に適用し、差別が公序良俗違反と言いうるような場合には、民法上も違法として損害賠償を認めているが、これでは、違法とされる差別行為が非常に狭いものに限定されることになり、根本的な解決にならない。

このように、私人による差別を正面から法律上禁止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のが、第2の根拠である。

(4) 福祉立法・福祉政策の限界

戦後も50年近く、世代としての抹殺を図ったとしか言いようのないハンセン病患者に対する社会政策を法的に支えた「らい予防法」なるものが、個人の尊厳を究極の目標として「法の下の平等権」以下の詳細な人権のカタログを行する日本国憲法の下でも、その存在を許され続けてきたという状況は、今日の日本の福祉の本質と限界を象徴するものに他ならない。保護（福祉施策）は、必ずしも権利を保障するものではないということなのである。

法律上の強制という点で大きな性格の違いはあるものの、施設待遇を根拠づける社会福祉法や分離教育を強制する学校教育法施行令も、保護を根拠に同世代の人間が体験するであろう社会体験の機会と地域で生きる権利を奪い、施設収容を固定化する役割を果たすことはあっても、決して権利を付与するものではないのである。

しかし、前述したように、地域生活を支援することを目的とした障害者基本法、雇用促進法や、ハートビル法、交通バリアフリー法にしても、障害を持つ人個人に何らかの権利を付与する法律ではないのである。

雇用促進法を例に取ろう。大ざっぱに言うと100の従業員がいれば2人くらいまでは障害を持つ人を雇いなさいというような法律で、確かにこの法律のおかげで、企業はずいぶん障害を持つ人を雇うようになった。しかし、まず、この法律は3人目からは障害を持つ人であるという理由だけで採用を拒否する事を容認、即ち差別を容認する法律であるということを忘れてはならない。採用現場においても、「もううちには、枠が残っていません（法定雇用率を越えている）」という事で、採用試験も拒否されたという話は良く耳にするところである。これは「可哀想だから会社の余力

の範囲内で少しは雇ってあげなさい」という慈善の発想から制定された福祉立法の限界を非常に鮮明な形で示してくれるものである。次に、たとえ仮に枠が残っている場合でさえ、会社は採用を拒否することもいわば反則金さえ拂えば自由であって、拒否された障害を持つ人にとって異議を申し立てて、裁判などで自己の意思を實現する手段はなにもないのである。なぜならば、この法律は雇用率も設けて企業が障害を持つ人を全体としてはなるべく多く雇用するような一種の社会保障の制度は作ってはいるが、それは、個々の障害を持つ人に差別無く採用される権利（人権）を与えたものではないからである。さらに、人権が無ければ、それが法的に侵害されるということはありえないのに司法救済手段が用意されるということもないものである。ところが、ADAでは、どれだけ障害を持つ人が応募しても障害がある事だけで採用を拒否する事を禁止しているのである。そして、採用を拒否された人は司法救済を求めて裁判を提起する権利が認められているのである。

このように、現行福祉立法は、地域生活を支援することを目的とするものであっても、障害を持つ人個人に司法救済の対象となる具体的な権利を付与するものではないというのが根拠の第3である。

(5) 人権救済のシステムが必要

i 無償のリーガルサービスセンターの必要性

人権はそもそも個人の権利であるので、その個人が主張しなければ、放棄したと

同然であり、また、どのようにその権利を主張するかは本来、個人の主体性に委ねられるべきものである。

しかし、障害を持たない人できえ、司法の分野では、刑事事件において國選弁護

や私選弁護、民事事件において代理人というリーガルサービスを受けており、その他の分野でも様々な社会的資源を利用してリーガルサービスを享受している。障害を持たない人にとっても、このようなりーガルサービスなくしては、实际上、自己の権利主張は有名無實となる。

弁護士にとっても、人権問題の場合、時間や労力がかかるのに對して、相応な報

酬を期待できる事件はほとんど皆無である爲、弁護士もかかる事件に関しては及び腰である。成年後見制度の改正により、弁護士も高齢の人や障害を持つ人に關心を抱くようになったものの、それは財産管理という側面が強く、無資力の障害を持つ人にとっては、依然として利用しづらい制度となっている。このような状態のもとでは、障害を持つ人にとって権利があるといつても、何ら實効的なものとはならない。

一方、例えば、ドイツの世話法には、無資力の場合の國庫支弁の規定があり、多

くの世話人がこの規定により高齢の人や障害を持つ人の財産管理のみならず、権利の擁護に盡くしている。また、アメリカには、発達障害法により設置された非営利の公的人権擁護機関である ‘Protect and Advocacy (P&A)’ が、発達障害を持つ人の代理人として、自らを設置した州政府をも訴えるような活動をしているし、民間においても非営利で公益を目的とした法律事務所が無償でリーガルサービスを提供しており、障害を持つ人の公民権の擴充に關し、多大の貢獻をしている。

日本においても法務省が成年後見制度を改正するに際して、当時の厚生省は地域

福祉権利擁護事業を立ち上げたが、1000円前後の費用徴収の壁に阻まれ、ほとんど機能していないというのが實態である（しかも、この制度は地域版であって施設入所の人には適用がない。）

このように、利用可能なリーガルサービスがなければ、権利の主体者として障害

を持っている人自身がエンパワすることは極めて困難である。

そこで、人権侵害を受けた障害を持つ被害者に對して無償でリーガルサービスを

提供する非営利公益法人が國家の予算措置によって設立され維持されていくことが必要である。

ii 差別禁止法の適正な実施と行政救済機関の必要性

差別を受けない権利を法律上規定したとしても、それが適正に実施されているのか、監視する専門の機関（例えば、労働基準監督署）がなければ、繪に描いた餅に終わる危険性が高い。また、司法救済は、一般的に多額の費用と長い期間を要し、しかも救済手段が限定されているので、その差別類型に応じた柔軟な解決という点では限界がある（例えば、損害賠償という救済手段だけでは、將來において差別そのものをなくすという点で限界がある）ので、迅速にしかも差別類型に応じて柔軟な解決が望めるような行政救済機関を設置する必要性がある。アメリカ、イギリスに、オーストラリアにおいてもそのような機関が設置され、重要な機能を果たしている。

iii 司法救済のあり方

差別されない権利が實定法として整備されない限り、司法は正面から差別の問題に取り組むことは困難であるが、それとともに、司法の關係で特に問題とされるべき点は判決に於ける原状回復の手段である。

アメリカには法源としてコモンローとエクイティ（衡平法）があり、前者の救済が金錢賠償命令であるのに對して、後者は作爲、不作爲を含む積極的は正命令があると言われるが、差別を受けた個人の最後の救済としては、この判決手法を利用した司法委救済の手段が存在し、1070年代から始まったアメリカの脱施設化訴訟の判決は、個々的な人権侵害を排除するだけでなく、行政に對して地域での自立生活をサポートすべ

き行政の責務を認めさせ、擴充するてテコとなってきたのである。

日本の既存の立法においても、特別法等には、一定の場合損害賠償以外の積極的な作爲命令を認める規定もないわけではないが、人権侵害に關して、このような作爲を命令する立法上の根據が現在のところ存在しない。また、クラスアクションや懲罰的賠償等が、差別事件の再發を防止する上で、きわめて重要な武器になるがそれらも含めて、立法上検討されるべきである。

このように人権救濟のシステムについての新たな立法を要するというのが、差別禁止法を新設しなければならない根據の第4である。

3. 各國の差別禁止法の類型

障害をもつ人の権利を守る法制には大きく分けて4種の類型がある。先に述べたことと倒伏することもあるが、それぞれの類型の効用と問題点を指摘する。また、どの國がどのような法制によるアプローチをとっているかは次のページの表を参考にしていただきたい。

(1) 刑事罰等、罰則でのアプローチ

障害のある人に對する差別や権利侵害に對し、刑事罰や行政罰によって罰則を定めるものである。例えば、フランスでは、雇用や企業活動、公共サービスでの障害者差別に2年以下の懲役を課している。このアプローチは、障害者差別が、強く非難されるべき、違法性の強い、人間の尊嚴を犯す行爲であることを明示するという長所がある一方、刑罰である以上、差別者の故意や惡意といった主觀的な要素を犯罪の成立要件として加えなければならない。この場合、意図しない間接的な差別を罰することが困難となる。

(2) 憲法アプローチ

國家の根本法規たる憲法に差別禁止規定をおくことは大きな意味を持ち、一括して法制度を変えることできるかもしれない。しかし先にも述べたが、問題点として、ニュージーランド憲法を除いては憲法上の平等條項において、「障害」「差別」の定義がされてないため抽象的であり、具体的権利ではなく、努力目標たるプログラム規定としてみなされる危険がある。また、國家と國民の行爲を規定する憲法では私人間の行爲を規定できない。

(3) 民事法アプローチ

このアプローチを取る國は多數に及ぶが、その中でもあらゆる私的、市民的な社會生活の場面について、網羅的な差別禁止規定をしているのはADAをもつアメリカをはじめ、オーストラリア、カナダ、英國などがある。このアプローチは刑罰や憲法での規定よりも、内容が詳細に規定されており、差別の概念についても定義されている。また、このアプローチの特色として法の内容の實現のための手段を規定していることである。伝統的な裁判所による解決以外に、全國評議會や委員會などを設置しており、また、法の遵守状況をモニターする機關を設置している場合も多い。

(4) 社會福祉法アプローチ

社會福祉關連法規による差別禁止規定は網羅的ではなく、個別の問題点を手直しするにとどまっている。このアプローチは、青年男子の健常者を近代市民の姿とし、その市民像に合致しないものは慈善や恩恵の対象として、社會福祉關連法の対象という19世紀以來の伝統的な考えにのっとるものである。しかも、その福祉の対象になるためには、障害や疾病が醫學的に厳密に認定されなければならず、その対象と認定された場合は一般の生活とは異なる特別に恩恵を受けた福祉ベースの生活を歩まされる。(3)の民事法アプローチが人間の多様性を前提としているのとは對照的である。

(表) 各國の類型

差別禁止法・権利保障法制	各國の法制の状況
罰則によるアプローチ	フランス、フィンランド、スペイン、ルクセンブルク、オーストラリア、香港、モーリシャス、フィリピン、イスラエノレ、ザンビア、ジンバブエ
憲法規定によるアプローチ	オーストリア、ブラジル、カナダ、フィンランド、フィジー、ガンビア、ガーナ、ドイツ、マラウイ、ニュージーランド、南アフリカ、スイス、ウガンダ
民事法によるアプローチ	オーストラリア、カナダ、チリ、コスタリカ、エチオピア、フランス、ガーナ、グニアテマラ、香港、ハンガリー、インド、アイルランド、イスラエル、韓国、マダガスカル、モーリシャス、ナミビア、ナイジェリア、フィリピン、南アフリカ、スペイン、スリランカ、スウェーデン、英國、アメリカ合衆国、ザンビア、ジンバブエ
社会福祉法によるアプローチ	ボリビア、中国、コスタリカ、フィンランド、パナマ、韓国、スペイン、ニカラグア

*日弁連人権擁護大會 (2001年11月) 第一分科會 (障害者差別禁止法の制定をめざして) の基調報告書から

일본 장애인차별금지법(요강안)

(장애인을 가진 사람에로의 차별을 금지하고 권리를 보장하는 법률)

장애인정책연구전국실행위원회
'장애인차별금지법' 작업팀

머리글

지난 2000년 10월, 미국 워싱턴 디씨에서 장애에 관한 법제도와 정책을 주제로 한 주목할 만한 국제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 보고를 듣고 무엇보다도 놀랐던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이 제정되고 있는 나라가 벌써 40개국 이상에 이른다는 것이다.

그들은 형법에 차별을 범죄로서 처벌하는 규정을 두는 나라, 개별 법률안에 해당 법률에 위반했을 경우의 벌칙을 정하는 나라, 헌법상 명문으로 장애를 가진 사람에로의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을 정하는 나라, ADA(장애인을 가진 미국인법)을 대표로 하는 형태로 민사법으로 차별을 금지하는 나라 그리고 사회복지법 관련으로 규정이 있는 나라 등으로 분류된다.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제도는 국제수준에서 볼 때 차별금지법을 제정한 나라에 있어서는 이미 최소한의 문화수준으로서 없어서는 안 될 사회시스템의 일부가 되어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

1990년에 제정된 ADA는 일본의 장애인운동을 벌이던 당사자나 지원자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지만, 10년 이상 지난 오늘날 그 현실성은 국제적 동향 속에서 명백하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UN '장애인의 10년'을 거쳐서 책정된 "장애인의 기회균등화에 관한 기준규칙"(1993년UN총회채택)에서 규정된 각국에서의 실시상황에 관한 모니터링(monitoring)이 2002년에 종료되었다. 이후 2001년 UN총회에서,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의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하기 위한 '특별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이후 이 위원회에 있어서는 NGO를 포함한 각국의 대표들이 활발하게 의견표명과 교류 등의 명확한 활동이 전개되어왔다.

이러한 국면 속에서 장애당사자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에 의한 아래로부터의 목소리와 다양한 노력의 집적으로 일본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가능성과 실현을 구체적으로 촉구하는 것이 기본적 과제가 된 것이다.

왜 "장애인기본법" 개정 만으로는 안되는가

일본에 있어서 지난 10년간, 심신장애인대책기본법이 "장애인기본법"으로 개정되고(1993년), 하트빌딩(heart building)법이나 교통바리어프리(barrier free)법 혹은 계약형 복지서비스의 이용 등을 정한 사회복지법 등 몇 가지 법률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이 중, 어느 것에 있어서 권리의 명시와 그 집행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민간사업자 등의 의무규정 및 차별의 정의와 그 차별을 위법으로 하는 금지규정이 없고, 장애인시책을 촉진함을 기본으로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에 머물고 있다.

장애인시책의 포괄적 근거로서의 현행 장애인기본법에 대해서는 주로 다음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1. 기본법 제1조 (목적)에서는 구(舊)법(심신장애인대책기본법)에 있던 "심신장애 발생의 예방에 관한 시책"이 삭제되고(구법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제26조의 2로 이행됨), "자립과 사회, 경제, 문화 기타 모든 분야의 활동참여 촉진"이 명기되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기본적 이념 (제3조2항)에서 "모든 장애인은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 할 기회가 주어진다"고 규정되어 있다. 즉 장애인은 "참여의 기회"가 시혜적으로 "주어지는" 대상으로 간주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권리로서 보장한다"고는 되어 있지 않다.

2. "생생"과 "보호"에 의거한 기존의 장애인시책 태두리 안 "시설입소"(제10조의2 제1항), "중증장애인의 보호 등"(제11조관계)에 머물며 장애당사자에게 장애의 경감과 극복 노력을 강요하고 "자립함이 현저히 곤란한"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보호의 관점에서 격리, 수용형의 시설 입소를 계속 추진한다는 점에서 "탈시설에서 지역으로"라는 명백한 방향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계획 책정을 비롯되어서 각 기본적 시책에 관한 규정이 "노력규정"에 머물고 있어 권리의 확립을 위해서 정책으로서 실효성을 높이는데 구조적 한계가 있다.
4. 덧붙여서 말하자면 2001년 8월, UN사회권규약위원회는 일본정부에 대해서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이 권고는 장애인기본법이 차별을 금지하는 역할과 실효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이 전체 되어 있다는 것에 주목하여야 한다.

전문(前文)

모든 개인은 태어났을 때부터 자유이며 고유의 존엄과 인권을 평등하게 가지고 있다.

그러나 장애를 가진 사람은 현재까지의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 신체적, 정신적 특징과 이유로 인해서 통상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능력이 부당하게 낮게 평가되고 다른 사람들과 평등한 입장에서 사회생활로 참여할 기회가 빼앗기고 혹은 제한되고 그 자유가 속박당하고 여러 시민적 권리가 실질상 박탈되어 왔다.

장애를 가진 사람은 차별당할 것 없이 권리의 주체로서 정치, 경제, 사회의 여러 활동분야로 평등하게 참여할 침해받지 않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장애를 가진 사람이 사람으로서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권리가 존중되고 장애로 인한 부당한 차별적 취급을 받지 않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포괄적 책임을 진다.

그와 함께 장애를 가진 사람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을 막고 있는 법적, 제도

적, 물리적 장벽 혹은 문화, 정보, 인식 속에 있는 편견 등의 여러 장벽들은 제거되어야 한다. 또 모든 일반시책으로부터 모든 장애를 가진 사람이 배제되어서는 안된다. 특히 필요할 경우 일반시책으로부터 분단되고 방지될 일이 없이 경제적 조치를 포함한 우선적이고도 적극적인 차별에 대한 시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법률에 의거해서 보장된 권리는 장애를 가진 사람의 국적, 인종, 신앙, 성별 또는 사회적 성차(性差), 사회적 신분 또는 출신지 등에 상관없이 장애를 가진 사람 모두에게 주어진다.

이 법률은 장애의 유무(有無)에 관계없이 사회 속에서 사람이 서로가 함께 더불어 생활하는 관계가 존중됨을 통해 각자가 그 필요에 따라서 보다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만인(萬人)을 위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 제정한다.

[제1장] 총 칙

1. 목적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차별적 취급의 원인이 그 장애를 가진 사람의 개인적 속성에 따른 것이 아니고 장애를 가진 사람을 둘러싼 사회적 환경에 의해서 규정되는 장벽에 의해 차별의 원인이 있는 것과 장애를 가진 사람이 모든 시민과 똑같이 개인으로서 고유의 권리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하는 주체임을 확인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사업자, 시민에 의한 차별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장애를 가진 사람이 사회의 평등한 구성원으로서 지역생활의 모든 장면 및 분야로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차별을 받지 않는 권리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장애의 정의

이 법률에 있어서 장애란 상해(傷害)나 병환 등을 원인으로 한 개인의 특성에 관계없이, 그 개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상의 능력이나 기능을 요구하는 사회적 환경과의 관계로 생긴 장애를 말한다.

3. 장애를 가진 사람의 정의

(1) 장애를 가진 사람이란 장기적 또는 일시적 혹은 장래에 예상되는 장애 때문에 생활상의 곤란함을 갖거나 가질 수 있는 상황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또한 환경정비 없이 장애를 가지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불이익을 받거나 받을 수 있는 상황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앞(1)의 장애의 과거의 기록 혹은 그러한 '장애를 가진다고 간주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차별의 정의

(1)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차별이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또는 기타 모든 생활분야에 있어서 신체적, 정신적인 특징과 이유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과 평등한 입장에서 사회생활로 참여할 기회를 빼앗기고 혹은 제한되고 그 자유가 속박되고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자유가 속박되고 있는 상태란 학대, 방치, 경제적 착취에 의해서 장애를 가진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 또는 정신에 대해서 위험이 가해질 위협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2)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의도하지 않는 차별도 앞의 (1)에 규정한 차별이다.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의도하지 않는 차별이란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무지, 무이해, 편견으로 인해서 행정기관 및 공적(公的) 혹은 사적(私的) 단체, 개인이 권리침해의 사실을 인정하지 않거나, 혹은 장애의 특성이나 필요(needs)를 고려한 적절한 배려를 안함으로써 그 결과, 장애를 가진 사람이 어떠한 불이익을 받고 부당한 취급을 받는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

5. 차별을 받지 않는 권리

장애를 가진 사람은 모든 생활분야와 그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 신체적, 정신적인 특징과 이유로 인해서 차별적 취급을 받지 않는 권리를 갖는다.

6.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사업자의 의무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사업자는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모든 차별을 철폐하고 시민에 대해서 이해를 촉진시킬 포괄적 시책을 적절한 수단으로 속히 실행해야 한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 법률 시행 후에 책정할 법령, 예규(例規)등은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보장된 차별을 받지 않는 권리를 실현할 자질(資質)을 가져야 하며, 장애를 이유로 행동제한을 받거나 이용과 참여를 제한하는 등의 성격을 가진 것을 제정해서는 안된다. 또한 현재 효력을 갖는 법령, 예규(例規)등은 시급히 개정, 폐지 혹은 무효로 하기 위해서 필요한 실효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모든 차별의 발생 예방과 철폐라는 관점에서 정책, 시책 일반을 재검토하고 필요한 개정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이 법률의 공포 후에 책정될 정책, 시책은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보장된 차별을 받지 않는 권리를 실현할 자질을 가져야 한다.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업 인허가등에 즈음하여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배려를 그 인허가 등의 조건으로 해야 한다.

(5) 사업자는 장애를 가진 사람 개인,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집단 또는 공익단체에 대한 차별적 행위 또는 관행에 대해서 종사 또는 관여해서는 안된다.

7.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의 적극적 개선책 실시

장애를 가진 사람의 자유와 평등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함을 목적으로 취해질 적극적 개선책은, 그 목적이 달성될 때 까지는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차별로서는 간주하지 않는다.

8. 가해자에 대한 거증(舉證)책임의 의무화

권리침해 사안(事案)이 발생했을 경우에 있어서 장애를 가진 사람이 피해 구제의 신고을 했을 경우 피신고인측이 "차별이 아니다"고 주장할 경우에는 전기(前記) [4.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차별의 정의] (1)(2)항에 의거해서 피신고인이 그 거증책임을 진다.

9. 언어와 문자(글)에 관한 권리

- (1) 일본수화는 독립된 언어로서, 일본어와 동등한 것으로서 인정된다.
- (2) 발성(發聲)을 따르는 수화는 일본어로서 취급된다.
- (3) 청각 장애를 가진 사람은 앞에서 언급한 어떤 것인지를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사용할 권리를 갖는다.
- (4) 점자는 일본어의 서기(書記)수단의 하나이다.
- (5) 시각 장애를 가진 사람은 점자를 사용할 권리를 갖는다.

10. 자기결정권의 보장

모든 장애를 가진 사람은 법률상의 절차일 경우를 빼고 장애를 가진 사람 자신의 생활 전반(全般)에 관한 의사 결정에 관해서 적절한 정보를 얻어서 스스로가 선택해서 결정할 권리를 가지며, 자신의 이익에도 불구하고 남의 관여를 받지 않는 권리를 갖는다.

[제2장] 장애를 가진 사람의 차별금지와 권리에 관한 기본사항

1. 지역생활

1) 지역생활에 관한 권리

장애를 가진 사람은 그 유형, 정도에 관계없이 장애를 가지지 않는 사람과 동등하게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고 지역에서 한 시민으로서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갖는다.

2) 지역생활에 관한 차별금지

장애를 가진 사람의 지역생활에 관한 차별이란 다음에 제시하는 것 이외에 장애를 가지지 않는 사람과 다른 취급을 받았을 경우를 말하며, 이를 금지한다.

- (1) 본인의 의사에 반한 시설생활을 강요되는 일.
- (2)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공영, 민간주택으로의 입주를 거부하는 일.
- (3)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여러 사회적 활동의 참여를 거부하는 일.
- (4)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연애, 혼인, 양육을 제한되는 일.
- (5) 장애를 가짐을 이유로 부모로서의 권리를 제한되고나 박탈되는 일.

3) 배려의무

-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기(前記) [지역생활에 관한 차별금지] 2-(1)(2)에서 규정하는 것 이외에 장애를 가진 사람의 지역생활을 가능케 하기 위한 충분한 소득 및 생활보조를 보장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실시해야 한다.
-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 부모가 될 권리를 제한하지 않으며 양육에 필요한 원조에 관한 시책을 실시해야 한다.
- (3) 사업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시책에 의거하여 장애를 가진 사

람이 부모가 될 권리를 제한하는 일 없이 양육에 필요한 원조에 협조해야 한다.

2. 이동

1) 이동에 관한 권리

장애를 가진 사람은 그 장애유형과 정도에 관계없이 장애를 가지지 않는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이동할 권리를 갖는다.

2) 이동에 관한 차별금지

장애를 가진 사람의 이동에 관한 차별이란 다음에 제시하는 것 이외에 장애를 가지지 않는 사람과 다른 취급을 받았을 경우를 말하며, 이를 금지한다.

- (1) 장애를 가진 사람의 원활한 이동 및 이용에서 아래에 제시하는 사항 즉, 도로, 인도 공공교통기관(역사, 버스터미널, 공항, 선착장, 철도역, 버스, 택시, 항공기, 선박)의 설계, 건축, 시공에서 소외
- (2) 장애를 이유로 한 자유로운 이동, 및 이용의 제한 및 거부.
- (3) 장애를 이유로 한 특별한 이동경로 및 수단 제공.

3) 배려의무

-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 안전하고도 원활하게 이동 할 수 있는 도로 및 공공교통기관의 정비에 관한 기준을 책정해야 한다.
- (2) 사업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기준에 의거해서 도로 및 공공 교통기관의 설계, 건축, 시공을 행해야 한다.
- (3) 사업자는 전기(前記) [2.이동에 관한 차별금지] (1)의 기준에 의거한 정비가 완료될 때 까지 장애를 가진 사람의 안전하고도 원활한 이동 및 이용을 확보하기 위해서 효과적인 대체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 (4) 사업자는 전기[2.이동에 관한 차별금지](2)(3)의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 (5) 사업자는 기존의 시설 및 서비스에 있어서 전기[2.이동에 관한 차별금지]의 차별이 존재할 경우는 일정 기간을 정한 개선계획을 세워서 이를 실

시해야 한다.

3. 건물

1) 건물에 관한 권리

장애를 가진 사람은 그 유형, 정도에 관계없이 건물의 이용, 거주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한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고 장애를 가지지 않는 다른 사람과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여기서 말하는 건물이란 사유(私有), 공유(公有) 관계없이 모든 건물을 가리킨다.

2) 건물에 관한 차별금지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건물에 관한 차별이란 이용자의 특정, 불특정(不特定), 다수, 소수에 관계없이 장애를 가지지 않는 사람과 다른 취급을 받았을 경우를 말하며, 이를 금지한다.

건물에 관한 다른 취급이란 다음과 같다

- (1) 장애가 있음을 이유로 해서 건물의 임대, 판매, 이용, 거주를 제한 또는 거부되는 일.
- (2) 장애가 있음을 이유로 특별한 이용통로, 수단을 제공되는 일. 이 경우는 단지 건물 안 뿐 만이 아니라 당해 건물과 외부를 연결하는 부지 내 통로의 이용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3) 배려의무

-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물에 관해서 원활한 이용에 관한 정비기준을 정해서 건축 확인의 요건으로 한다.
- (2) 건물소유자는 전기[2. 건물에 관한 차별금지](1)에서 규정하는 기준을 실시해야 한다. 단 기존 건축물에 있어서 소유자가 과도한 부담을 증명했을 때는 해당하지 않는다.
-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를 가진 사람의 건물 매매, 임대, 보수 등의 계약에 즈음하여 원조를 위한 필요한 시책을 실시해야 한다.

(4) 사업자는 장애를 가진 사람의 건물 매매, 임대, 보수 등의 계약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할 원조를 위한 시책에 협조해야 한다.

(5) 사업자는 장애를 가진 사람의 건물 매매, 임대, 보수 등의 계약에서 장애를 가진 사람이 제3자의 동석(同席), 조언을 요구했을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4. 이용

1) 이용에 관한 권리

장애를 가진 사람은 그 유형, 정도에 관계없이 모든 상품, 시설, 편의, 판매, 접객 등의 서비스나 프로그램 이용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한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고 장애를 가지지 않는 다른 사람과 동등한 이용할 권리를 갖는다.

2) 이용에 관한 차별금지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이용에 관한 차별이란 이용자의 특정, 불특정(不特定), 다수, 소수에 관계없이 장애를 가지지 않는 사람과 다른 취급을 받았을 경우를 말하며, 이를 금지한다.

이용에 관한 다른 취급이란 다음과 같다

- (1) 장애가 있음을 이유로 해서 이용을 제한 또는 거부되는 일.
- (2) 장애가 있음을 이유로 장애를 가진 사람이 원하지 않는 특별한 이용 수단을 제공되는 것. 및 그에 부수된 여러가지 경험들을 제한되는 일.
- (3) 장애가 있음을 이유로 서비스나 프로그램을 이용할 기회가 제한, 거부되는 일.

3) 배려의무

-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용에 관해서 서비스제공사업자가 장애를 가진 사람의 필요에 대응한 적절한 배려를 하도록 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감독, 지도를 해야 한다.
- (2) 사업자는 전기[1. 이용에 관한 권리]에 있어서 예시하는 서비스나 프로그

램 사업을 행하는 장소의 물리적인 환경정비가 불가능한 경우 그 장애를 가진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등 대체(代替)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 (3) 사업자는 전기(2)의 대체조치에 대해서 해당 서비스나 프로그램 사업을 장애를 가진 사람과 협의를 거쳐서 그 자세한 내용을 정해야 한다.
- (4) 사업자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 전기(3)의 협의에 있어서 제3자의 동석(同席), 조언을 요구했을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5. 정보와 커뮤니케션

1) 정보와 커뮤니케션에 관한 권리

- (1) 장애를 가진 사람은 자신이 선택하는 방법으로 모든 종류의 정보를 이용하고 향수하고 또 표현할 권리를 갖는다.
- (2) 장애를 가진 사람은 총칙9에서 제시하는 수단을 이용하기 위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환경정비를 요구할 수 있다.

2) 정보와 커뮤니케션에 관한 차별금지

전기[정보와 커뮤니케션에 관한 권리](1)(2)의 권리를 장애를 이유로 제한되는 일 또한 다음 조항 이하의 수단 등의 보장을 소홀히 하는 것은 차별이며 금지된다.

3) 배려의무

-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시책에 관한 사항의 공표에 있어서는 항상 다음에 예시하는 것 같은 장애에 대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인쇄물은 점자인쇄 및 음성역(音聲譯) 이용이 가능케 한다. 음성으로 되어 있는 것은 문자로의 전환이나 수화로 번역을 한다. 영상이나 화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음성이나 촉각(觸覺)에 의한 인식도 가능하도록 한다. 문장으로 되어 있는 것은 쉬운 용어나 문체를 이용한 판(版)도 작성한다.
- (2) 이상의 조치가 취해졌으면서도 이용, 입수에 있어서는 그러한 조치가 취해지지 못했던 것의 이용, 입수를 할 때 필요로 하는 수거, 대가 이상의 부담을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부과해서는 안된다. 의회나 사법기관도 또

한 같은 의무를 진다.

-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방송사업자나 전기통신사업자 등 정보의 제공이나 이용에 관계되는 사업의 사업자에 대해서 장애를 가진 사람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비 등의 정비를 지원해야 한다.
-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기(3)의 사업자의 각 사업이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의 면허, 허가 등에 연관되는 것일 때는 그 면허, 허가 등의 조건 안에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적절한 정비를 포함시켜야 한다.
- (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화나 점자 등 총칙9에서 제시하는 각 수단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정비해야 한다.
- (6) 방송사업자, 전기통신사업자, 출판사, 신문사 등 정보의 제공이나 이용에 관계되는 사업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준(準)해서 장애를 가진 사람의 정보를 이용, 향수 또는 표현할 권리 실현을 위해서 필요한 대응을 취해야 한다.
- (7) 전기(1)-(6) 각 항목의 실시요령에 대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자의 대표 및 장애를 가진 사람의 대표에 의한 협의기관을 설치해서 작성해야 한다.
- (8) 사업자는 수화나 점자 등 총칙9에 제시하는 각 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정비에 노력해야 한다.

6. 교육

1) 교육에 관한 권리

- (1) 장애를 가진 사람은 생애 어떤 단계에 있어서도 같은 세대의 장애를 가지지 않는 사람과 통합된 교육을 받는 권리를 갖는다. 단 농아(聾兒)는 집단 내에서의 수화, 맹농아(盲聾兒)는 집단 내에서 효과적인 커뮤니케션에 의한 교육을 받는 권리를 갖는다.
- (2) 장애를 가진 사람은 생애 어떤 단계에 있어서도 전기(1)의 교육을 받는데 그 개개인에 상응한 개별적 지원을 받는 권리를 갖는다.
- (3) 장애를 가진 사람 및 그 대리인은 개별지원책정에 관해서 그 과정에 참여해서 의견을 말하고 또 책정된 개별지원의 내용에 관해서 설명을 받고 의의를 표명할 권리를 갖는다.

2) 교육에 관한 차별금지

장애를 가진 사람의 교육에 관한 차별이란 다음에 제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원칙적으로 통합적인 환경에서 장애를 가지지 않는 사람과 함께 교육을 받는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일.
- (2) 전기(1)에도 불구하고 농(農)학교에서 수화교육을 하지 않는 일.
- (3) 필요한 개별적 지원을 하지 않는 일.
- (4) 장애를 가진 사람 혹은 그 대리인이 희망하는 교육에 필요한 환경과 지원을 받기 위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일.

3) 배려의무

- (1) 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장은 장애를 가진 본인의 합의하에 그 본인에 대해서 필요한 개별지원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해서 그것을 기초로 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 교육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환경과 지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또 제공되고 있는 교육환경이나 지원 내용에 대해서 의의를 제기해서 시정 청구할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 제도를 창설해야 한다.
-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통합된 교육 및 농학교에 있어서의 수화교육을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통합적 시책과 그에 필요한 이행수단을 위한 시책을 실시해야 한다.

7. 취업

1) 취업에 관한 권리

- (1) 장애를 가진 사람은 어떠한 차별적인 처우도 받을 일 없이 사회 모든 분야에 있어서 일하는 권리를 갖는다.
- (2) 장애를 가진 사람은 직장환경이나 인적(人的)원조 등 직업을 얻어서 취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원을 받는 권리를 갖는다.

2) 취업에 관한 차별금지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취업에 관한 차별이란 다음에 제시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를 금지한다.

- (1) 장애를 이유로 채용을 거부 또한 해고하는 일.
- (2) 채용, 임금, 승진 등의 노동조건 혹은 노동환경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불이익한 취급을 하는 일.
- (3) 장애를 가진 사람이 취업을 하는데 장벽이 되어 있는 결격(缺格)조항이나 최저임금 적용 제외규정 등 법제도상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적인 조항을 방치하는 일.
- (4) 장애를 가진 사람이 스스로의 희망과 특성에 입각해서 직업을 선택하기 위해서 필요한 직업상담, 직업알선, 취업을 유지하기 위한 지원 등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일.

3) 배려의무

- (1) 사업자([7.취업]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는 장애를 가진 사람의 특성이 원활하게 발휘할 수 있도록 업무를 확보하고 직장에 있어서의 최선의 지원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 (2) 사업자는 장애를 가진 사람의 취업 확대와 직장 정착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고용관계에 있는 종업원 전원에 대해서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의 부정적인 태도와 편견을 극복하기 위한 인권교육, 계몽에 관한 직장연수를 관계행정기관이나 비영리 민간관계단체 등과의 협조 아래 실시해야 한다.
-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를 가진 사람의 고용을 촉진하려 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벌칙이 따른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또 장애를 가진 사람이 사업자에 의한 부당행위로 인해서 권리를 침해당했을 경우 장애 당사자의 상황에 배려한 구제제도와 지원기관을 설치해야 한다.
-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를 가진 사람을 고용하려고 하는 사업자 및 장애를 가진 사업자에 대해서 직장환경의 물리적 개선, 인적지원 등의 정보제공이나 적극적인 재정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
- (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를 가진 사람의 일반취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행동계획을 책정해야 한다. 해당 행동계획에는 다음 방책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 직장환경을 다양한 장애를 가진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혹은 장애를 가진 사람의 필요에 따라 개선하는 방책.
- 새로운 기술의 이용과 보조기구, 기기(機器)의 개발과 생산에의 지원을 하며 장애를 가진 사람의 취업 획득과 유지를 가능케 하기 위해서 장애를 가진 사람이 보조기구와 기기의 입수를 용이하게 하는 방책.
- 적절한 훈련과 배치, 인적원조나 통역서비스 등에로의 계속적인 지원.
- 장애를 가진 노동자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와 편견을 극복하기 위한 인권 교육, 계몽 캠페인을 제창(提唱), 지원하기 위한 방책.
- 공평한 고용승진정책, 고용조건, 급여, 상처와 손상을 예방하기 위한 직장 환경의 개선책.
- (6)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복지적 취업을 하는 사람들을 본(本) 기본사항⁷에서 목적으로 삼고 있는 일반취업에 원활하게 이행(移行)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시책을 행해야 한다. 그 이행기간에 있어서는 복지적 취업에 관계된 노동법규를 신속히 적용한다.

8. 의료 및 재활

1) 의료과 재활에 관한 권리

- (1) 장애를 가진 사람은 심신의 상태를 자신의 의사로 양호하게 유지하고 자신이 원하는 일상생활과 사회참여를 이룩하기 위해서 스스로 요구하는 의료 및 재활(이하 '의료 등'으로 함)을 받는 권리를 갖는다.
- (2) 자신이 원하지 않는 의료 등의 제공은 이를 거부하는 권리를 갖는다.

2) 의료 등에 관한 차별금지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취업에 관한 차별이란 다음에 제시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를 금지한다.

- (1) 장애를 가진 사람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그 개인으로서의 존엄을 상하게 하는 부당한 의료행위를 하는 일. 또는 의료라는 이름 아래 강제적으로 격리적인 환경에 가두는 일.
- (2) 정신의료에 있어서의 의료종사자 수 등 다른 과(科)와의 격차를 만드는 등 열악한 의료 환경을 방지하는 일.

3) 배려의무

- (1) 의료 등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해서 제공해야 할 서비스 내용에 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정보전달 수단에 의한 충분한 설명을 제공해서 그 동의와 선택을 보장해야 한다.
-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 자신의 의사와 선택을 바탕으로 한 의료를 사회 서비스로서 제공할 수 있는 시책을 실시해야 한다.
-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 안심하고 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정보제공을 보장하며 의료관계 기관의 체제를 확충해야 한다. 특히 정신의료에 있어서의 종업원 숫자의 특례 등은 다른 과(科) 기준과 동등하게 설정해야 한다.
-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 받은 의료의 내용 등에 의의를 제기하거나 손해를 받았을 경우에 당사자나 대리인에 의해 법적 조치를 포함한 구제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창설해야 한다. 또 그것을 위해서 장애를 가진 사람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책을 실시해야 한다.
- (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의료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장애를 이유로 진찰이나 치료를 거부하거나 부당한 의료행위를 제공하거나 열악한 의료환경을 방지하거나 장애를 가진 사람의 존재를 부정해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상하게 하는 의료행위가 행해 졌을 경우에는 신속한 지도, 고발을 하고 그 정보를 공개해서 상응한 벌칙이 따른 법적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 (6)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의료이용자가 사회적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 있는 편견과 차별을 제거하는 계몽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9. 출생

1) 출생에 관한 권리

- (1) 장애를 가진 사람은 출생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는 권리를 갖는다.
- (2) 임신, 출산에 있어서 어떠한 장애를 가진 태아도 살 권리를 갖는다.

2) 출생에 관한 차별금지

- (1) 모든 사람은 임신 때 장애를 제거하기 위한 치료, 검사를 강요되어서는

안된다.

(2) 모든 사람은 태아에 대해서 장애를 이유로 한 낙태를 해서는 안된다.

3) 배려의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를 가진 사람의 출생에 있어서 그 부모에 대해서 임신, 출산, 양육에 관해서 필요한 원조에 관한 시책을 실시해야 한다.

10. 성(性)

1) 성에 관한 권리

장애를 가진 사람은 그 유형, 정도에 관계없이 장애를 가지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성을 가진 개인으로서 존중되고 어떠한 사람에게서도 연애나 성적관계를 제한 혹은 강제되지 않고 임신과 출산을 하는 권리를 갖는다.

2) 성에 관한 차별금지

장애를 가진 사람의 성에 관한 차별이란 전기[1.성에 관한 권리]를 부정되거나 혹은 이하와 같은 취급을 받는 일을 말한다.

- (1) 장애를 가짐을 이유로 성적관계를 제한 또는 강제되는 일
- (2) 장애를 가짐을 이유로 피임, 낙태를 강요되고 아이를 낳는 기회를 빼앗기는 일.
- (3) 장애를 가짐을 이유로 자궁적출(子宮摘出) 및 단종(斷種) 등의 성식기능을 빼앗는 일.

3) 배려의무

-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의 부당한 자궁적출, 단종을 없애기 위한 시책을 실시해야 한다.
-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를 가진 사람의 임신, 출산에 필요한 원조에 관한 시책을 실시해야 한다.
- (3) 사업자 및 어떠한 개인도 장애를 가진 사람의 부당한 자궁적출, 단종에 관여해서는 안된다.
- (4) 사업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시책에 의거해서 장애를 가진 사

람의 임신, 출산에 관해서 필요한 원조에 협조해야 한다.

11. 정치참여

1) 정치참여에 관한 권리

장애를 가진 사람은 그 유형, 정도에 관계없이 정치참여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한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고 장애를 가지지 않는 사람과 동등한 권리 를 갖는다.

2) 정치참여에 관한 차별금지

장애를 가진 사람의 정치참여에 관한 차별이란 이용자의 특정, 불특정 다수, 소수에 관계없이 장애를 가지지 않는 사람과 다른 취급을 받았을 경우를 말하며, 이를 금지한다.

정치참여에 관한 다른 취급이란 다음과 같다.

- (1) 장애를 가짐을 이유로 투표의 기회가 제한되거나 상실되는 일.
- (2) 장애를 가짐을 이유로 장애를 가진 사람이 원하지 않는 특별한 수단이나 장소에서의 투표 밖에 못하는 일.
- (3) 장애를 가짐을 이유로 선거에 관한 정보가 공평하게 제공되지 않는 일.
- (4) 장애를 가짐을 이유로 피선거권 및 그에 부수된 선거활동이 사실상 제한 되거나 빼앗기는 일.
- (5) 장애를 가짐을 이유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의 시민으로서 발언, 제안의 기회가 제한되고 또는 빼앗기는 일.
- (6) 장애를 가짐을 이유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취업이 제한 되거나 거부되는 일.
- (7) 장애를 가짐을 이유로 의원으로서의 활동이 사실상 제한되거나 빼앗기는 일.
- (8) 장애를 가짐을 이유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정보가 공평하게 제공되지 않는 일.

3) 배려의무

-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선거, 투표에 관한 정보를 모든 장애를 가진 사람의 필요에 대응해서 전해야 한다.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정보의 원활한 이용에 관한 정비기준을 책정해야 한다.
-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투표소에 있어서의 접근성에 대해서 건물의 원활한 이용에 관한 정비기준을 준수(遵守)시킬 의무를 갖는 것과 더불어서 장애를 가진 사람의 다양한 필요에 합치된 방법으로 공개해야 한다.
-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정보를 장애를 가진 사람의 다양한 필요에 합치된 방법으로 공개해야 한다.
- (4) 국회 및 지방의회는 그 의원 및 직원의 활동이 장애를 가짐을 이유로 제한되는 일이 없도록 적절한 배려를 제공해야 한다.

12. 사법절차

1) 사법절차에 관한 권리

장애를 가진 사람은 그 유형, 정도에 관계없이 사법절차에 관한 헌법 이하 실정법이 정하는 권리들에 대해서 장애를 이유로 한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고 장애를 가지지 않는 사람과 동등하게 보장될 권리를 갖는다. 동등하게 보장된다는 것은 장애를 이유로 한 사실상의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배려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

(장애를 가진 사람은 사법절차에 관한 권리가 침해되었을 경우 그 배려의무를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

2) 사법절차에 관한 차별금지

장애를 가진 사람의 사법절차에 관한 차별이란 사법기관 등이 제공해야 할 이하 예시될 배려를 받지 못하고 또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 자신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이하 예시될 고유의 권리를 제한되는 일을 말하며 이를 금지 한다.

(1) 사법기관 등이 배려해야 할 사항

절차의 사용될 문서 및 이것에 비슷한 의사전달 수단에 대해서는 점자

및 음성역으로 이용 가능한 것으로 하는 것.

음성에 의한 것에 대해서는 문자로의 전환이나 수화로의 번역으로 이용 가능한 것으로 하는 것.

영상이나 화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음성이나 촉각(觸覺)에 의한 인식도 가능하도록 하는 것.

문장에 대해서는 쉬운 용어나 문체를 이용해서 용이하게 이해가 가능한 것으로 하는 것.

건물 구조에 대해서는 장애를 가진 사람의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개조하는 것.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사정청취, 조사, 심문(尋問)등에 있어서는 그 장애의 특성에 배려한 수단, 방법, 형태로 이뤄져야 한다.

(2) 장애를 가진 사람의 사법절차에 있어서의 고유의 권리

시각에 장애를 가진 사람, 청각에 장애를 가진 사람, 맹농자 등이 자신의 감각기능을 보완하기 위해서 필요한 소통수단이나 보조자를 이용하는 것은 그 사람의 고유의 권리이며 어떠한 장면(방청도 포함됨, 이하 같음)에 있어서도 그 이용을 제한되지 않는다.

지적(정신지체)장애,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이 자신의 이해를 돋고 혹은 심리적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보조자를 이용하는 것은 그 사람의 고유의 권리이며 어떠한 장면에 있어서도 그 이용을 제한되지 않는다.

3) 배려의무

- (1) 모든 사법기관(법원, 검찰청, 행정시설, 변호사회, 경찰서, 해상보안청 등) 및 준 사법기관(노동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아동상담소)은 장애로 인한 사실상의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한 전기[2 (1) 사법기관 등이 배려해야 할 사항]에 예시한 것처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기 위해서 인적, 물리적 정비를 도모해야 하고, 그것을 위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 (2) 법관, 검찰관, 변호사, 경찰직원 등 전기(1)의 대상기관 직원은 정기적으로 장애를 가진 사람의 특성과 그 배려에 관해서 연수를 받아야 한다.

[제3장] 실시 및 구제기관

1. 조직체제

(1) 이 법률을 실효성이 있는 것으로 하기 위해서 그 실시기관으로서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의 차별금지와 권리에 관한 위원회(가칭 "장애인 인권위원회")를 설치한다.

(2) "장애인 인권위원회"의 이사회는 장애를 가진 사람, 권리옹호에 관한 학식경험자 변호사, 검찰관 등으로 구성되며 또 정부로부터 독립된 조직으로 한다.

(3) "장애인 인권위원회" 아래 이하의 과제별 전문위원회를 설치한다.

1. 지역생활

2. 이동

3. 건물

4. 이용

5. 정보와 커뮤니케션

6. 교육

7. 취업

8. 의료와 재활

9. 출생

10. 성

11. 정치참여

12. 사법절차

(4) 전문위원회는 과제마다 문제의 실태를 유형화해서 무엇이 차별인지에 대한 해석지침을 작성해서 또 본법을 구체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세부규칙을 작성한다.

2. 실시기관으로서의 역할

이 위원회의 실시기관으로서의 직무 및 권한은 아래와 같다.

(1) 장애를 가진 사람이 놓여 있는 현황을 조사해서 우리나라의 차별의 실태

를 밝히는 일.

- (2) 본법 시행에 대비해서 차별의 정의, 배려의무 등의 해석지침을 책정해서 이를 홍보하는 일.
- (3) 본법에 의해 책정되어야 할 국가 시책의 대강(大綱)을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가 책정한 시책의 내용과 실시상황에 대해서 조사, 감시해서 정기적으로 그 조사결과와 그것에 대한 의견을 내각에 제출하는 일.
- (4) 본법의 개정, 관련법규의 개폐, 제정에 관해서 제안을 내각에 제출하는 일.
- (5) 본법 실시에 관한 상담창구를 개설해서 정보제공, 권리옹호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일.
- (6) 구조적 차별에 관해서는 권고 내지 시정명령을 내리는 일.

3. 구제기관(救濟機關)으로서의 역할

이 법률에 기초를 둔 권리를 침해되었을 경우의 구제기관으로서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차별금지위원회"(가칭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를 중앙 및 도도부현(都道府縣)(*번역자한국의 "道"에 해당함)을 하나의 단위로서 지방에 설치한다.

이 위원회의 구제기관으로서의 직무 및 권한은 아래와 같다.

- (1)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는 복수의 구제(救濟)위원을 임명한다.
- (2)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는 신청을 받으면 우선 임의(任意)의 조사를 해야 한다. 임의 조사에 의해서 밝혀지지 않았을 경우로 또 사안의 해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될 사건에 관해서는 직권에 의한 현장조사를 포함한 조사를 실시한다.
- (3) 조사 결과로 차별이나 학대 등의 행위가 분명히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될 경우를 제외하고 구제위원이 피해의 회복을 위한 조정을 연다.
- (4) 조정이 성과 없이 끝났을 경우로 또 차별행위가 인정될 때는 사안의 심각성, 긴급성에 따라서 시정명령, 경고, 권고, 요망, 공표 등의 처분을 한다. 피해자 구제에 필요할 경우 긴급일시보호 등으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행위가 범죄가 된다고 인정했을 때는 고발을 해야 한다. 사안의 심각성, 피해의 광범위성을 고려해서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근

본적인 구제가 안된다고 생각할 때는 스스로 소송을 제기하고 또는 피해자가 일으킨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 피해자가 제기한 소송에 있어서 증거자료의 개시(開示)를 청구했을 때는 이에 응해야 한다.

4. 국가의 책임

국가는 사법 및 준 사법구제에 관해서 법원 및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 등의 이 실효성이 있는 구제수단을 갖출 수 있도록 사안의 특성에 맞는 조정, 재판 등의 절차,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서 필요로 되는 적극적인 작위명령 등에 관한 법률을 정비해야 한다.

[제4장] 장애를 가진 사람을 위한 지원기관

1. 조직체제

- (1) 국가는 장애를 가진 사람의 권리에 관해서 장애를 가진 사람의 입장에서 상담을 받고 혹은 대리인으로서 임의의 교섭이나 행정구제절차, 사법절차에 의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기관으로서 도도부현(都道府縣)을 하나의 단위로 해서 장애를 가진 사람을 위한 권리옹호기관(가칭 "장애인 권리옹호센터")를 설치한다.
- (2) "장애인권리옹호센터"는 공익법인으로 하며 그 이사회는 장애를 가진 사람, 권리옹호에 관한 학식경험자, 변호사, 복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2. 직무 및 권한

- (1) "장애인권리옹호센터"는 장애를 가진 사람, 학식경험자, 변호사, 복지전문가를 직원으로 배치하고 장애를 가진 사람의 입장에 서서 장애를 가진 사람 및 관계자의 상담에 대응한다.
- (2) "장애인권리옹호센터"는 상담을 받고 나서 문제해결에 필요할 경우 상대방 내지 관련기관에 대해서 임의 및 직권에 의거한 강제조사를 할 권한

을 갖는다.

- (3) 조사 결과로 문제해결에 필요하다면 대리인으로서 상대방과의 임의의 교섭이나 행정구제절차, 사법구제절차를 통한 문제해결을 도모한다.
- (4) 앞서 본 절차들은 무료로 해야 한다. 단 문제 해결로 인해서 장애를 가진 사람이 실제로 금전적 이익을 얻었을 경우 일정한 기준으로 보수를 받을 수 있다.

3. 국가의 책임

- (1) 국가는 "장애인권리옹호센터"를 각 도도부현(都道府縣)마다 하나씩 활동해서 그 지질을 갖는 공익법인에 위탁하고 장애를 가진 사람 및 전문가를 복수 직원으로서 배치할 수 있는 예상을 할당해야 한다.
- (2) 국가는 동(同) 센터 이사 및 직원의 선임, 해임, 센터의 운영 등에 관여해서 그 독립성을 침해해서는 안된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요강안(보조설명)

장애인정책연구전국실행위원회내 「장애인차별금지법」 작업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기본적 틀

장애인차별금지법(이후 차별금지법이라함)을 입안하려는 경우에는, 먼저, 기본적인 틀을 어떻게 생각해 갈 것인가가, 처음의 주제가 된다.

일반적으로 인권에 관련된 규정을 크게 구별하면, 국제인권규약의 틀을 보아도, 자유권(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사회권리(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에 의해 구성되어 있다.

또한, 일본의 헌법에도 자유권 규정과 사회권 규정은 별개로 규정되어 있다.

그 이유는, 첫째, 봉건국가에서 제한되었던 시민의 자유를 국가로부터 빼앗아, 자유를 시민의 손에 돌려주는 것이, 봉건제로부터 근대시민 사회에 이동하기 위한 투쟁 있었기에 그들에 의해 성립된 시민사회는, 먼저, 국가에 대한 자유권을 헌법에서 확인하는 것 이였다.

그러나, 국가에 대한 자유권만으로는, 실질적인 의미에서의 자유로운 생활이 보장되어지지 않았기에, 현대적인 권리로서의 사회권이 탄생하게 되었다. 그런데, 자유권은 시민의 자유로운 행위에 대해 국가의 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부작위를 청구하는 것이나, 사회권은 오히려 국민의 자유로운 활동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때문에, 국가의 작위 조작을 요구하는 권리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양자는 법적으로 성격이 크게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취급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양자는 전혀 별개의 것은 아니고,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자유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사회권을 쟁취 한 것이다. 이상의 특질을 생각해서 차별금지법은, 본래적으로 자유권의 체계에 속하는 것이다. 그러나 단순한 기회평등적인 평등에서는, 장애의 상황에 맞는 개인의 차별을 배려한 실질적인 평등을 달성할 수 없다. 그래서, 실질적인 평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런 차별금지법안에 국가의 행위를 청구하는 사회권으로서의, 구체적 권리 성격이 있는 사회서비스법 제정을 향해서 중간 역할적 고안을 도입 할 필요성이 있다. 그 틀은 다음과 같이 정리 할 수 있다.

- (1) 자유권을 기본적 기둥으로서 국내의 최고법규, 즉 차별금지법의 상위법인 헌법과의 관계를 생각하게 된다. 이 경우 헌법의 근거 조항으로서 13조(자기결정권, 행복추구권)과 14조(법 아래 평등과 기본적 인권과 자유를 받아 들일 권리)를 중심에 위치를 정한다. 그리고 자유권을 기초로 하는 목적, 이념을 달성하기 위해 적극적인 수단으로, 사회권(소득보장이나 개호 서비스 또는 교육이나 취로 등의 특별한 요구)에 의거 할 사항을 결부하여 틀을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
- (2) 앞의(1)의 틀 만들기를 전제로 해서, 이동, 건물 또는 취로, 교육 등의 각 과제(【제2장】 기본사항) 마다, ①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②「차별의 금지에 관한 규정」, ③불특정 다수의 장애를 가지 사람에게의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환경 또는 기반정비에 관한 「일반적인 시책 의무」, ④민간사업자 등에 요구하는 개별 구체적인 「배려의무」 등 4개의 항목을 행고, 그 중에서 ③과 ④에 관해서는 배려의무라 해서 각각의 항목마다에 필요한 내용을 명기해 간다.
- (3) 차별금지법에 있어서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시설의무」와 민간사업자 등에 맡기는 「배려의무」의 실효성을 구체적으로 담보하기 위해서는, 독립성과 전문성의 기능이 확보된 「시설 또는 구제기관」과 「지원기관」에 관해 명기하고, 준사법적 단계와 사법(재판)의 양방면에 대응 가능한 수법에 의해 신속한 문제해결을 도모할 구조의 내용을 명시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역할

차별금지법의 역할로서는, ① 「장애를 가진 사람」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차별」 등의 정의를 명확히 할 것, ② 사회 서비스나 교육, 취로 등의 사회권에 관련된 관계법률의 재평가·개정, 학대방지 기본법(가칭)등의 입법화를 촉구하고, 혹은 재판규범으로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한 법적 근거로서 역할을 들 수 있다.

[제1장] 총 칙

2. 장애의 정의 / 3. 장애를 가진 사람의 정의

일본에 있어서 법령상에 정해져 있는 「장애」 또는 「장애를 가진 사람」의 정의에 대해서는, 의학 모델에 얹매어 제한되어 있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1993년에 개정된 장애인기본법의 제2조의 정의에서는, 「이 법률에 있어서 『장애인』 이란, 신체장애, 지적장애 또는 정신장애(이하 「장애」 라 총칭 함)가 있기에, 장기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한을 받는 자를 말 함」 이라 했고, 기능적인 장애를 열거한 것만이 아니라, 생활상의 제한을 가진 자로서 생각을 표시했다.

그러나 아직 구체적인 시책이나 서비스 수급이 연결된 현행법의 「장애인」의 정의는 기능 장애에 중점을 둔 의료적 모델에 얹매여 있다. 그것은 서비스 수급을 한정하는 결점을 가진 것 이외에도, 장애를 가진 사람의 권리 보장을 의미에 있어서 결점이 있다. 「무엇인가를 한다」를 위해 서비스가 필요하고, 그것이 보장되어지기 위한 생각이 아니고, 「무엇을 할 수 없는가」 이란 「공공의 판정」이 선행한다. 그것은 주위의 사람이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 보는 방법에도 큰 영향을 준다.

그 사람 개인의 문제로서 서비스가 필요한 것인지, 주위의 환경의 개선이 필요한 것인지, 이것들이 얹힌 관계인지를 확실하게 보이는 정의가 필요하다.

거기서 우리는 장애를 사회모델로서 사용할 표현을 논의했다. 장애를 보다 넓게, 또는 생활상의 곤란을 가진 사람을 포괄해 표현하는 것에 고려해서,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생각된다. WHO의 새로운 정의^{(注)나}, 외국의 차별금지법의 정의도 참고하면서, 또한 일본어의 표현으로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지금 당분간 의논의 필요할 것이다. 여러 가지 다른 가치를 부여하는 권리를 표현하지 않으면 안 되고, 장애를 가진 사람 본인의 체험에 근본을 둔 표현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생각한다.

(注) WHO와, 1981년에 「기능장애, 능력장애, 사회적 불리」의 3개의 레벨에서 장애를 정의했다. 2001년에는 그것을 개정해 장애를, 부정적인 용어가 아니고 중립적인 용어를 가지고, 기능장애(구조장애를 포함)(impairment), 활동제한(activity restriction), 참가제약(participation restriction)의 3개의 계층이 환경 인자와 개인 인자를, 배경 인자로서 상호에 관련해 발생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출전:후생노동성사회·원호국장애인복지부『국제생활기능 분류- 국제장애인분류개정판(ICF)』2002년)

4 장애를 가진 사람의 차별의 정의 / 5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차별의 정의에 관해 정하는 조항이다. 특히 중요한 것으로서 이하의 것을 들 수 있다. 먼저 4의(1)의 학대가 있다. 학대(abuse)는 작게 분류해서 신체적 학대, 성적학대, 심리적학대의 3종류로 분리, 구속은, 신체적 학대의 하나의 분류이다. 방치(neglect)와, 개호방치, 의료방치의 2종류로 분리, 남은 경제적 착취(financial exploitation)에는, 여러 가지 착취 형태가 있다.

다음으로 4의(2)에 대해서 설명한다. 「3년 정도 이용하고 있는 이용실에 몇일 전에 갔었다 일을 마치고 나올 때, 종업원이 『전동휠체어를 둘 장소가 없으니 다음에는 사양해주었으면 합니다』 라 말을 했다. 그 종업원은 점장에게 말을 들은 듯 했다. 점장에게 물으니 일부러 가게에 오지 않아도 자신이 자택에 가서 머리를 잘라주겠다고 친절한 맘으로 말해주었다. 휠체어의 입점을 처음부터 거부하는 가게도 있지만, 여기는 3년 동안 다녔는데 갑자기 입

점을 거부당한 것에 대해서는 매우 쇼크이고, 『친절한 마음에서』라는 말을 들어도 납득이 가지 않았다』 - 이러한 사례로부터도 확실해지듯이 차별이나 권리침해가 일정의 문제인식을 가지고 있는 장애를 가진 당사자나 지원자 등의 시선으로 보면 자명하지만, 현실의 평균적인 시민의식과의 관계에서는, 무지·무이해·편견으로 일률적으로 차별이나 인권침해로 보여지는 것이 매우 많다.

상대측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노골적인 차별이나 권리침해를 받았다는 사례보다는, 상대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장애를 가진 사람의 니즈에 대해 상대측의 무지·무이해·편견에 의해 상대측(가해자)이 권리침해의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그로 인해 결과적으로 장애를 가진 당사자가 무엇인가 불이익을 받고, 차별적인 대우를 받는 경향이 강한다는 것을 듣는다.

이러한 실태를 포함해 「차별의 정의」를 생각해 가는 경우에는, 이러한 무지·무이해·편견에 의한 의도하지 않은 차별도 차별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해둘 필요가 중요하다.

6.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 사업자의 의무

장애를 가진 사람에의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는 국가·지방공공단체·사업자가 해야하는 기본적인 행동규범을 정한 조항이다.

(2),(3)은 정부·시책 또는 그 기본이 되는 법령·례칙은 모두 장애를 가진 사람이 소유하고,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의 실현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면 안 된다. 국가나 지방공공단체는, 이제까지의 정책·시책 또는 법령·예규를 고치지 않으면 안되고, 장애를 가진 사람에의 차별이 있는가 없는가의 수정이 의무되어져야 한다.

구체적인 예로 들면, 결격조항으로 불려지는 일연의 조항이 있다. 장애나 질병을 특정화해, 그것을 가진 사람에의 자격취득 제한이나, 행동 제한을 주는 조항이다. 근년 이들의 조항을 고쳐 많은 진전을 보였다. 그리고 그 내용은, 이제까지 법률에서는 장애명이나, 병명을 특정시 했던 것을 하위의 규칙·레벨의 특정에 바꾸어 놓는 수법으로 「개정」하는 것이 많은 등, 결코 장애를 이유로 한 결격조항의 적발은 되어지지 않은 예가 많이 있었다. 이 차별

금지법에서는 이러한 수법은 통용되지 않는다.

결격조항을 없애려는 운동에서는, 직접적은 자격취득을 제한하는 조항만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장애를 가진 사람의 참가나 이용을 제한하는 조항도 결격조항으로, 고침의 대상이 되도록 문제 삼았다. 예를 들어 선거의 투표방법이다. 자필이 곤란한 사람, 투표소에 가는 것이 곤란한 사람도 투표가 가능한 제도가 지금의 법률에서는 되어 있지 않다. 그 때문에 투표를 못하는 사람이 많다. 이러한 경우도 대상이 되는 것이다.

또, 재해시 지역방재계획의 정책에 있어서는, 정보보장을 포함해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상황에 맞는 충분한 배려를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법령·예규의 개정을 위한 조치도 행정의 의무이다. 여기서는 「개정의 의무라한다」라 기록하지 않는 것은, 법률이나 조례의 개발·제정의 권능은 의회에 있기 때문이다. 필요한 개발·제정은 원칙적으로 의회에서 의결에 의해 것이지만, 만약 의회가 소홀하게 한다면 입법 부작위의 책임을 지게 될 거라 생각한다.

또한, 장애를 가진 사람의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의 현실을 위한 시책이나 그것을 기반이 되는 법령·예규의 제정이, 그 권리행사의 상대의 권리제한에 연결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이용의 장면에서 영화관 등의 객석 배치에는 휠체어 이용자의 이용을 배려하는 것이 요구된다. 영화관은 거의 민간업자에 의한 경영이기에, 민간인의 영업의 자유나 재산권의 행사와 충돌하고, 그것의 일정의 제약시키는 것이 된다. 그러나 그것은 장애를 가진 사람을 함께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 그 인권의 확립 보장을 도모하는 목적과 비교해서 필요한 제한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7. 장애를 가진 사람에의 적극적인 개선책의 실책

이 경우 「적극적개선책」이라는 것은,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의 개선책을 실책하기 위해서 적극적 개선책을 실시하는 것이다. 다음과 같은 생각으로 되어 있다.

- ① 단순하게 기회의 평등적인 평등이 아니고, 장애의 유무나 정도에 의한 차별적인 취급이 생기는 것을 막고, 개인적인 차이에 배려한 실질적인 평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필요한 배려나 의무를 맡기는 것이다.

② 어디까지 그것은 차별이 해결될 때까지의 과도적인 조치인 것이다.

일본에서는, 장애인고용촉진법의 기인으로 「법정고용율」(1.8%, 58인 이상의 사업소)이 설정되어 있으나, 실고용율의 평균은, 1.4~1.5%을 유지하고 있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었을 경우도 「법정고용율」은 당면, 폐지되면 안 된다. 오히려 「적극적개선책」에 의해, 예를 들어 독일(법정고용율 6%, 16인이상의 사업소→실고용율 4.0%)정도로 끌어올리지 않으면, 실고용율의 평균이 그 「법정고용률」에 도달한 단계이라도, 「적극적개선책」으로서의 과도적인 조치는 폐지되게 되어 있다.

8. 가해자에 대한 거증책임의 의무부여

현행 제도에 있어서 권리침해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 장애를 가진 당사자가 침해구제의 신청을 해, 피해자 측에 「입증책임」이 주어진다. 현실적으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기에, 피해자에게 억울하지만 단념하라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러한 현상을 포함해 피신청인 측이 「차별이 아니다」라 주장 할 필요가 있다 인정하는 경우는 먼저 피신청인이 그 거증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되는 것을 명기한다.

9. 언어와 문자에 관한 권리

장애를 가진 사람이 이용하는 언어와 문자에 관해 규정하는 조항이다.

일본 수화는, 청각에 장애를 가진 사람 중에 주로 청각장애인과 · 그렇게 불리는 사람들의 제1의 언어로 되어 있는 언어이다. 수화라 한마디로 불리우는 것이 많으나, 「일본 수화」와 「일본어 대용 수화」와 그 중간형의 수화로 크게 나눌 어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일본 수화」와 음성언어인 일본어와는 어휘나 문법의 면에서 별개의 체계를 가진 언어인 것에 대한 이해가 요즘 확립되어 가고 있다. 언어-특히 모국어나 국어-는 그 화자에게는 커뮤니케이션의 수단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그것은 인식이나 사고의 근원이기 때문이고, 세계를 자기의 것으로 하고, 자기를 형성 시켜 가는 그 기반이 되는 「도구」인 것이다. 청각장애인에게는

수화가 그 언어인 것이다.

수화는 근년 사회적으로 넓혀지고 있다. 그러나 언어로서의 수화에 대한 정당한 평가가 되었다고는 말 할 수 없다. 언어 이하의 것, 일본어의 불안전한 대체 수단이라는 단계에 머물고 있다고 밖에는 평가 할 수 없다. 특히 청각장애인(농인) 교육의 세계에서는 고작해야 일본어의 습득에 실패한 청각장애인, 어쩔 수 없이 이용하는 커뮤니케이션 수단 정도의 위치에 놓여있다.

이러한 인식은 수화를 제1언어로 하고 있는 청각장애인의 자기 희망하는 언어의 이용이라는 기본권리의 실현을 방해하는 것이다. 여기서 일본어와 동등의 위치에 일본어 수화에게도 주어지게 하는 것이 취지의 (1)이다.

「일본어 대용 수화」라는 것은, 주로 일본어의 發話(※음성)를 수반하면서 표현하는 수화이다. 이것은 어휘의 면에서도 문법 면에서도 일본어에 가능한 대용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취지이다. 그러므로 일본어의 표현 수단의 하나로서의 위치를 정하는 것이 (2)의 취지이다.

점자는, 일본어를 적어서 표현하는 표음문자의 하나이다. 일본어를 문자로 적어서 표현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발음대로는 되지 않는다. 예로서 「와타시 와」라 발음을 해도 그것을 가명이나 한자로 적을 때는 「私は」로 된다. 한편 로마자로 적을 때에는 "Watashiha"가 된다. 이와 같이 점자에도 표기상 독특한 룰이 있다. 그러나 일본어를 적어서 표현하는 기능에 있어서는 다른 것이 없으므로 그것에 응한 정당한 자리를 정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 (4)의 취지이다.

10. 자기결정권의 보장

본 규정 중에 「법률상의 절차에 의한 경우」라는 것은, 성년후견제도 등을 말한다. 또 「자기의 이익에도, 불이익에도」라 하는 것은, 예를 들어 게임에 가지고 있는 돈을 전부 사용하거나, 같은 물건을 몇 개씩 사거나, 하는 경우가 생각되어 진다.

「실패」도 본인의 의사, 자기결정의 결과의 하나로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보호의 이름의 아래에 본인의 의사를 경시하거나 행동을 제한하는 것은 자립이나 사회 참여를 방해하는 것이다.

장애를 가진 사람이 범죄의 가해자도 피해자도 되어지지 않는 지원이나 금전 관리 등의 훈련, 일상생활의 여러 가지 지원체계를 정비해 가는 것은 중요하고, 그 내용은 「보호」가 아니고, 「엔파워먼트」에 연결되는 것이 아니면 안 된다.

[제2장] 장애를 가진 사람에의 차별금지법과 권리에 관한 기본 사항

1. 지역생활

장애인 시책의 역사는, 일본 뿐이 아니라, 세계 각 국에 있어서도 배제나 격리의 역사였다 말하는 것이 과언은 아닐 것이다.

기본적 인권을 강조한 헌법의 아래에서도 장애를 가진 사람이 시설에서 생활하는 것은 마치 「당연한 일」로서 되어있었다. 정상화의 이념을 집어넣어 만든 장애인 계획에도 시설을 증가시키는 수치 목표가 설정되어, 「착실」하게 그 목표를 달성하는 상황이다. 국가의 조사에 의하면, 신체장애인에서는 351.6만인 중 18.9만인(2001년)이, 지적장애인에서는, 45.9만인 중 13만인(2000년)이, 정신장애인에서는, 214만인 중 34.1만인(1999년 추계)이, 시설 또는 병원에서 생활을, 할 수 없이 했다. 장래적으로는, 모든 시설 또는 정신병원을 해체할 필요가 있으나 당면의 책으로서 「본인의 의(義)에 위반」이라 규정했다. 「시설, 병원으로부터 지역에」를 실현하기 위한 시책의 대전환과 구체적인 틀 만들기를 진행해 가지 않으면 안 된다.

장애를 가진 사람의 주택 확보에는 많은 곤란이 있다. 휠체어 이용자가 부동산을 방문해도 처음부터 상대해주지 않는다. 개선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아파트의 입거를 거부당한다. 이렇게 장애를 가진 사람에의 무지·무이해·편견에 의한 것도 많다. 또 단신의 지적장애,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공영 주택에의 입거가 제한하는 등, 지역 생활을 방해하는 것은 제도상의 문

제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시책을 정비해 가는 것과 함께 사람들의 의식 변혁에 연결되는 인권 교육과 계발의 활동도 포함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 생활의 필요불가결한 것은 소득 또는 개호(※ 생활보조)보장이다. 실체 법으로서 정비하지 않으면 된다. 소득에 관해서는 현장에서는 생활보호나 특별장애인 수당을 포함 장애기초연금의 어느 것인가 해당되지만, 지역에서 자립생활을 하는데 불충분한 수준이다. 개호에 대해서도 다양한 사회참가를 보장하는 틀로 되어 있지 않다. 제공되는 시간 수의 수준이 낮고, 지역 간의 격차 등 많은 문제가 있다. 「권리로서의 지역 생활」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 기반이 되는 주택, 소득, 개호의 일체적인 시책의 정비가 필요하다.

또한 지역 생활 속에는 파트너를 만나서 결혼하거나, 아이를 가지는 것도 생활의 일부로서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 결혼이나 아이를 가지는 것을 반대하고, 이혼하는 경우 아이의 친권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결혼이나(결혼 제도에 관해서는 찬반양론이 있지만 결혼이라는 제도가 존재 하는 이상 그것을 바라는 사람이 있기에 첨가했다) 어린이 양육을 바라는 사람에게 필요 이상의 속박을 하지 않도록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는 장애를 가진 사람의 부모가 될 권리와 아이를 자신의 주위에서 양육하는 환경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이동

복지의 마을 만들기 조약이나 바리아후이법의 제정 등 장애를 가진 사람의 이동에 관한 시책은 일정의 전진을 보이고 있다. 철도역에의 엘리베이터, 휠체어용 화장실, 홈에서의 전락방호 울타리의 설치, 버스에의 단독 승차와 저상 버스의 운행, 도로의 단사해소, 도로의 넓이 확대 등, 장애를 가진 사람의 이동 환경은, 종래도 비교하면 개선 되어왔다. 그러나 한편으로 항공기에 있어서 휠체어 이용자의 인수 제한이나 탑승 거부, 시각장애인 사람의 홈에서의 전락 사망 사고 등 이동에 관해 여러 가지 문제가 전국 각지에 존재하고 있다.

현행 제도에 있어 「이동의 권리」는 명기되어 있지 않고, 여전히 행정이나 사업자의 재량에 맡기고 있기에 결정적으로 불충분을 내포하고 있고 있다. 이 차별금지법에 있어서 권리를 명확하게 하는 것과 함께 차별을 금지하는 것에 의해 장애를 가진 사람의 자유로운 이동을 확보하기 위한 틀을 확립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틀의 기본은 「장애를 가진 사람을 위한 환경 정비」가 아니고 장애를 가진 사람을 포함해 모든 이용자에 있어 사용하기 쉬운 것이다. 단기간에 전면적인 정비는 어렵다 해도 그 우선순위나 개선 목표의 명확화 그리고 당면의 책으로 대체 조치의 실시 등 실질적으로 이동에 관한 차별이 해소되는 틀이어야 한다.

3. 건물

역이나 호텔 학교 등의 건물의 바리아후리화에 대해서, 교통 바리아후이법이나 바트빌법 등에 의해 일정의 전진이 보이지만, 기본적으로 장애를 가진 사람이 건물을 이용할 권리를 전제로 하고 있지 않다. 그로 인해 업자나 행정의 노력 의무에 맡기고 있는 부분이 많고, 상당히 바리아후리도 진행이 늦어지고 있다.

더구나 어디를 바리아후리 하고 하지 않을 것인가의 선택도 현행의 제도에서는 이용자가 특정다수인가 불특정인가의 요인 등에 영향이 있다. 그래서 호텔의 입구에서 방의 밖(출입문)까지의 바리아후리가 포함되어도 방의 안은 포함되지어 있지 않는 등 본래전도(처음과 끝이 전도)되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

공공·민간에 관계없이 모든 건물이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이용하기 쉬운 바리아후리가 되기 위해서는, 건축 허가나 개축(보수) 할 때, 바리아후리를 위한 의무 부여 등이 필요하다.

이러한 이유에서 장애를 가진 사람의 건물을 구입, 빌림, 거주, 이용을 권리로서 확실하게 명기하고, 현행의 법률의 개정이나 새로운 입법을 요구해 법률상의 근거(조항)가 필요하고, 차별금지법에 이러한 규정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4. 이용

일반적으로 「○○을 이용하다」라는 경우, 그 범위는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여기서 말하는 「이용」은, 본장의 「기본사항」에서 다루고 있는 지역 생활에 있어서의 주택문제나 이동, 건물, 정보 등의 각 지역의 악세스(접근)에 관한 장면에서는 커버할 수 없으나 여러 가지 개별의 소비 활동에 있어서 「이용」의 장면(모든 상품·시설·편의·판매·접객 등의 서비스나 프로그램의 이용)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고도성장기에 상품 가격을 내리기 위해 획일적으로 효율성 제일의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의 구조가 많은 방면에서 만들어 졌다. 그로 인해 장애를 가진 사람의 개별의 니즈(요구)에의 대응을 무시되어 왔다.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려해도 테이블에 점자의 메뉴가 없어 시작장애의 사람은 이용 할 수 없다. 영화관에 가도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의 경우, 좋아하는 배우의 포스터가 걸려 있는 곳은 지날 수가 없고 별도의 통로로 안내된다. 또는 판매업자의 설명 부족으로 인해 지적장애를 가진 사람이 부당하게 비싼 상품을 구입한다. 각종의 이벤트나 상품에 대해 문의할 때, FAX나 멜 등의 없기 때문에, 청각의 장애를 가진 사람은 필요한 문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일상생활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여러 가지 사회 활동에의 참여를 의미하는 「이용」을 제한, 거부하는 현상은 결코 적지 않다.

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이러한 여러 상황에 응하여, 어떤 특정의 서비스나 프로그램을 장애를 가진 사람이 이용할 경우, 이용하는 장소의 물리적인 환경정비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장애를 가진 사람과의 협의를 통해 다른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의무를 부여하여 규정을 만들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5. 정보와 커뮤니케이션

알 권리, 표현을 할 권리, 헌법이나 국제인권규약에 보장되어 있는 기본적인 권리의 대표적 권리이다.

이 권리가 장애를 가진 사람에 있어서는, 완벽하게 보장되어 있다고는 말할 수 없는 현상이다. 예를 들어,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문자(住)를 붙이는 방송은, 2001년 시점에 NHK종합 방송에서 22%, 민간 5개의 방송국의 전 방송을 합쳐서 6.3%에 불과하다. 점자에 의한 문서는 아직 한정된 것에만 작성되어지고 있다. 문장의 독해에 곤란을 가지 지적장애인을 가진 사람에의 대응은, 아직 거의 인식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현상을 바꾸고, 장애를 가진 사람이 폭넓은 정보를 받아들이고, 이용하고, 표현하는 것을 보장하는 조항이다.

「3 배려의무」의 (4)항은, 방송 사업이나 전기 통신 사업은 국가의 면허·허가 사업이므로, 그 틀을 이용해, 그것들의 유니버설디자인을 진행시키는 것을 국가의 의무로 하는 조항이다.

그런데, 표현물을 장애를 가진 사람이 이용하기 쉽게 하는 경우, 그 표현물의 모체를 적당한 것으로 변화시키거나, 표현의 고치는 것은, 계획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그 경우 저자권의 보장이나 표현의 자유와 불화를 일으키는 것이 현장에서는 적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장애를 가진 사람의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이나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결과를 만든다. 그러한 권리나 자유와, 장애를 가진 사람이 이용할 권리와의 조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조화라는 것은 이른바 「피차일반」이라는 것이 아니고, 장애를 가진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읽지 못하는 것도 사람에게는 있을 수 있고, 표현은 그 사람에게 맞는 범위에서 성립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저자권이나 표현의 자유에도, 합리적인 이유에 기초를 두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그 「합리적인 이유」에 장애를 가진 사람의 권리 보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 할 수 있다.

(住)

여기서 말하는 자막이란, 크로즈도캡션이라는 것이다. 이 자막을 보기 위해서는, 이것에 대응하는 기능이 있는 문자 방송 주신 장치가 필요하다.(장치를 내장한 텔레비전도 있다). 이 장치는 일상생활 용구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청각장애인 세대에서는 자기 부담은 거의 없이 구입하고 있다. 거의 없는 문자방송이지만, 대응하는 장치가 없으면 그것을 볼 수가 없다.

한편, 미국에서는 14인치 이상의 텔레비전에는 문자 표시 장치(데코타)의 내장이 의무화 되어 있다. 미국과 일본에서의 문자 표시의 규격은 다르지만, 일괄해서 비교하는 것은 어렵지만, 이러한 대응을 일본의 회사에서도 해야 한다.

6. 교육

세계적으로 보아도, 장애아 교육은 통합(인크루시브 교육)을 원칙으로 하는 방향이다. 그러나, 문부과학성의 자세는 일관으로 분리 교육을 유지하고 있다. 그 중에서, 많은 장애아는 지역의 보통 초등학교에 당연하게 취학하는 것이 안 된다. 지금까지의 운동 중에, 당사자나 부모가 희망을 명확히 하면 보통학교에의 취학이 가능한 지역도 있지만, 입학 후의 지원의 불충분함(부모에게 아이 옆에서 돌봐주도록 하는 것, 한사람 한사람에 필요한 지원의 미제공, 왕따 등)으로부터 특수학교에의 취학·전학을 할 수 없이 시키는 경우, 어떤 경우에는 교육위원회의 강한 지도에 항의하지 못하고 특수학교를 선택하고 마는 경우도 있다. 2003년도부터 학교 교육법 시행령의 「개정」에 의해, 「인정취학자」라는 틀로, 교육위원회가 「특별한 사정이 있다」라 인정한 경우, 보통학교에 취학이 인정되게 되었으니, 교육위원회의 취학 지도에 의해 가늠하는 것은 남아 있고, 「인정취학자」라 하는 라벨로 필요한 지원을 받을까, 반대로 차별을 발생시킬 위험이 있는 것이 아닐까 지금으로서는 걱정이 증가 한다.

장애를 가진 사람도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에서 많은 사람과 관계를 가지고 생활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 정상화의 생각이다. 교육은, 그러한 사회를 실현하는 기반 만들기의 역할을 담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통합 교육을 원칙으로 차별금지법의 규정을 필요하다 생각한다. 그 원칙을 만들어 개인 개인의 니즈(욕구)를 확보하는 틀을 확보하고, 그것에 대해 동의하고, 이의를 제기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강구하는 것과, 분리 교육을 할 수 없이 선택하지 않는 시책의 실시도 필요하다.

농이나 맹농아가, 자신들의 언어로 하는 수화나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습득 해 가는 것은, 권리로서의 보장되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또 언어로서 습득해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그 언어를 사용하는 당사자들의 집단의 장소가 확보되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이상과 같이 국제적으로는 통합 교육이 진행되고 있으나, 병행해서 이러한 농이나 맹농아에의 대응의 방법의 필요성도 인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현재 상태의 농(聾)학교의 방법을 그대로하고, 농(聾) 학교만을 존속시키는 것은 아니다. 수화를 핵으로,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으로서의 긍정적인 자기실현을 꾀하고, 그러한 교육의 장소로 변혁

해 가는 것을 농(農)학교에 맡기고 있다.

7. 취로

장애인의 취로에 대해서는, 일반 취로와 복지적 취로라는 구분으로 시책이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일반 취로에 대해서는, 채용, 직장 환경, 인금 등에서 여러 가지 불이익한 상황에 처해있고, 국가가 정한 고용율 제도도 기업 측의 태도에 따르는 상황으로 많은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또 본인 혼자서 업무를 수행 할 수 없다 여겨지는 중도장애인은, 授産시설(지적장애인에게 낮에 이용하는 작업소를 포함한 시설)이나 소규모 작업소에서 활동이 복지적 취로가 되고, 일반 취로에 연결되지 않을 뿐 아니라, 시책의 불충분함을 숨기는 역할을 담당해 왔다 말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을 포함해, 먼저 장애를 가진 사람이 일반 취로를 하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직장만이 아니라 신변의 지역에서도, 사람에 의한 지원을 받으며 움직이는 것이 당연한 권리로서 인정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직장 환경의 불충분함이나 최저 임금 적용 제외 등의 부당한 취급, 또는 일을 하는데 있어 필요로 하는 자격 취득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결격조항 등을, 장애를 가진 사람이 움직이는데 있어서 장벽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으면 안 된다. 또 현재의 고용율제도에는 그 산정 방법이나 납부금제도와 그 용도 등에 관해 너무도 많은 문제가 포함되어 있다. 우리들은 기업이 일정의 비율로 장애를 가진 사람을 고용하는 것에 대해, 적극적 시정조치를 만듦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현상의 제도 자체를 어떻게 바꾸어 갈 것인가, 그것을 어떻게 금지법에 규정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의 「요강안」 제기에 의론해 가고자 한다.

한편으로는, 다달이 약간의 임금밖에 받지 못하는 授産시설이나 소규모 작업소의 시인되어진 복지적 취로는, 일반 취로로서의 자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일반 취로에의 연결하는 시책로서 철저화할 필요가 있다. 이번의 「요강안」에서는, 그 점을 포함해, 과도적인 내용으로 복지적 취로에 대해서는 일반의 노동관계법규를 적용하고, 열악한 조건에서 일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권리를 조금이라도 수준의 향상의 내용도 담고 있다.

8. 의료와 재활(사회복귀 훈련)

의료(재활을 포함)에 관해서는, 두 가지 측면을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나, 장애인이 진료를 바라는데 진료를 거부당하는 것이 없도록 하는 것. 둘, 자신이 바라지 않는 진료를 거부하는 것. 장애를 가졌다는 것으로 보통의 진료 가능한 진료를 받지 못하는 것은, 많은 장애를 가진 사람이 경험하고 있다. 의료이고, 재활이고, 자신이 적절한 정보를 얻어, 자신의 의사를 기본으로 하는 한, 사회 서비스의 일관으로서, 어떠한 장애를 가진 사람이든 진료 받을 것은 당연하게 요구되는 것이다.

한편, 장애를 가진 사람이 자신의 바라지 않는 의료나 재활훈련을 받도록 강요되어 온 것은 부정 할 수 없다. 그 중에서도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은, 의료의 이름 아래 부당한 의료 행위나 격리된 환경에 놓여져 왔다. 진료를 받을 때의 합의의 확보, 부당한 의료 행위를 금지하는 것과, 만약 바라지 않는 의료 행위를 받았을 경우의 구제 조치, 그 위에 의사가 전달되지 않을 경우에는 자신의 바라지 않는 진료를 거부하는 틀을 확보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 정신 의료에 관해서는, 진료를 희망하는 당사자가 안심하고 진료 가능한 제도가 요구되고, 다른 의료보다도 적게 설정되어 있는 종사자 수를, 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9. 출산

본 사항에 대해서는, 장애의 유무에 의해 생명의 가치가 정해지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이다. 「낳다 안 낳는다는 여성이 선택한다」라는 주장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낳는다 안 낳는다는 것을, 각각의 개인이 자기결정을 확보하지 않으며 안되지만, 그것은 남녀를 구별하여 낳는 것이나, 장애를 가진 태아의 배제를 하는 자기결정 과는 다르다.

낳는다고 결정하는 것이, 본인 또는 부모에게 불이익이나 비난으로 이어져서는 안 되고, 생활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에의 차별로 이어지는 논리가 생겨서는 안 된다.

장애는, 그 존재 자체가 문제되지 않는다. 장애를 가진 것에 의해 생기는

생활상의 곤란함이 문제인 것이다. 인생의 출발점을, 장애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막히는 것에 대해서 강하게 이의를 표한다.

10. 성(性)

장애를 가진 것을 이유로, 성을 거부당하거나, 그의 가볍게 보여져서는 안 된다. 장애를 가진 사람은, 교육에 있어서도, 시설에 있어서, 또 가정에 있어서, 지역사회에 있어서, 성을 가지지 않는 것, 즉 중성으로서 취급받는 것이 많다. 그러나 그 개인에게는 자기의 성을 어떠한 성으로 인식하는 것과는 별개로서, 장애를 가졌기 때문에, 성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라는 사회 측의 취급은, 그 개인의 인격을 부정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에의 성적 학대는 없어지지 않는다. 장애 가지거나, 가지지 않거나, 강간은 큰 범죄다. 가해자의 죄의 무거움은, 피해자가 장애를 가지고 있던 가지지 않던 차는 없다. 그러나 시설이나 작업소 등의 폐쇄적인 환경에서 성적 관계를 강요당하는 것, 그것을 명확히 하지 못하고 단념해야 하는 것만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또 1996년에 우생보호법(優生保護法)이 개정되어 모체보호법이 되었고, 장애를 이유로 해서 본인의 동의 없이 불임수술을 인정하는 조항이 없어졌다. 그러나 「장애를 가지고 있는 당신이 아이를 가질 필요는 없다」 「생리 개호는 힘들다」 등 말을 계속하고, 「결혼을 하려면 생식기관을 없애라」는 말로서 본인의 동의를 유도적으로 얻어, 불임수술을 하는 것은 없어지지 않았다.

어떠한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도, 장애를 가지지 않는 사람과 같이, 사람을 사랑하고, 아이를 출산할 권리라는 있다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11. 정치 참여

정치 참가의 권리, 정치권은, 기본적 인권의 하나이고, 구체적으로는, 선거권·피선거권·공무원이 될 권리 등을 들 수 있다. 장애를 가진 사람은, 사회의 하나의 구성원으로서 이 권리를 장애를 가지지 않은 사람과 평등하게 받

아들려야 한다. 또, 인권침해나 불공평을 시정하기 위한 법제도 만들기에 장애를 가진 사람 자신이 참가하는 것이 보다 좋은 효과가 얻어진다는 관점에서도, 정치 참가는 큰 의미를 가진다.

그런데, 실태는 장애를 가지지 않는 사람과의 큰 격차는 확실하다. 예를 들어, 선거 공보의 점자판이 제도화되어 있지 않고, 정견 방송이나 후보자의 가도연설에 있어서 수화통역의 제도도 일관되어 있지 않다. 또 전국의 투표소의 70%가까이에 단사가 있고, 그 과반수가 인적 개호에 의존하는 현상보고도 있다. 시설이나 병원 내에 특정의 후보자에 투표하도록 강요, 우편 투표, 대리투표의 조건규제완화의 필요성도 큰 문제다.

피선거권에 대해서도, 중의원의원 480인, 참의원의원 247인중, 장애를 가진 의원의 수는 수명밖에 없다. 지방자치단체의 의원에 대해서도, 장애인 인구의 전체인구에 대해 비율을 만족시키기에는 좀 먼 숫자이다. 공무원이 될 때 장애가 없는 것과 보조가 필요 없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는 곳도 있다. 행정부나 입법부의 정보가 창구나 인터넷, 인쇄물을 통해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지적장애인이 이용하기 쉽게 되어 있는 쉽지 않은 가도 문제다.

현행의 공직선거법이나 지방공무원법이 이러한 문제에 관련되어 있으나, 장애를 가진 사람의 정치 참가의 권리라는 시점이 빠져있기에, 행정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 크고, 시책에 일관성도 없다. 투표소의 바리아후리 등, 직접 행동을 촉구하는 법률이 없기 때문에 그다지 진행되진 않는다.

따라서 차별금지 법에 정치참가의 차별금지를 명확화 하는 것으로, 관계하는 현행법을 수정하고 개정을 촉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장애를 가진 사람을 보다 많이 정치에 참가시키기 위해서는, 아파마티브·액션(적극적 차별해소 조치)을 제도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12. 사법절차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사법 또는 사법관계 모든 기관도 공공기관의 하나로서, 그 권한행사에 있어서는, 사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현상의 사법기관 및 사법관계 모든 기관이 인권 보장상, 극히 중대한 기능과 역할을 가지고 있는 것을 포함해, 특별한 배려가 주어지는 것이 요구되어진다. 특히 형사사법의 분야에 있어서는, 헌법에 규정된 적정한 수속 조항을 기반으로, 형사피의자, 피고인에 여러 가지 권리가 보장되지만,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형식상 이것이 보장되어 있다고 해도, 실질적인 배려가 없다면, 피해자, 피고인의 자신을 방어하는 권리가 보장되어 있다 말 할 수 없다.

이것은 조사의 시작부터, 판결이 결정되고, 형의 집행이 수료하는 모든 과정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일반 사회 생활상에 있어, 자기주장 하는 것이 곤란한 장애를 가진 사람은, 형사절차에 있어서는, 더욱 자신을 정당하게 방위하는 것이 곤란한 상황에 둘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는 것 보다 명확하다. 특히 취조의 과정에서, 자신에 불이익한 공술을 강요당하고, 또는 취조관의 여러 가지 유도에 의해, 결과로서 죄가 없어도 누명을 쓰는 일이 발생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 역으로 장애를 가진 사람이 가해자가 아니고 피해자의 경우, 피해에 관한 증언 능력에 관해서, 무지, 이해부족으로, 이유 없이 불신감이 일반상식으로서, 사법관계자 인식하는 상황에서는, 정당한 구제를 바라는 것이 힘들다. 일반 사회인이 피해자라면, 형법 또는 민법의 규정에서 해결하는 경우, 학대 등의 피해자가 장애를 가진 사람의 경우, 피해자의 증언의 신용성이 낮다하여, 사법기관 등의 정당한 권한이 사용되지 않은 채 방치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민사에서는, 지적장애를 가졌다는 것만으로, 증언에 신용성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의 자세는, 사법의 거부와 같은 경우도 있다. 이러한 실태를 포함해, 장애를 가지지 않은 사람과 동등한, 사법절차에 관한 모든 규정이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권리로서 행사 될 수 있게 특별의 배려 사항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3장] 실시 또는 구제기관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차별은, 국민 개인 개인의 마음에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국가의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상황에 깊게 관련되어 있기에, 차별을 없애는데, 개인 개인의 행위를 금지하는 방법만으로는,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차별의 현상을 구명하고, 차별을 없애기 위한 비전(구성)을 제시하고, 그를 위한 정책을 실행하는 것 없이는, 전체로서의 차별을 없애 수 없다. 이상의 필요성이, 본 「요강안」에 있어 「실시기관」을 설치 한 것이 제1의 이유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장애를 가진 당사자를 이 기관의 의견결정 또는 「실시기관」에 참가시키는 것이다. 왜냐하면, 당사자가 본 차별과, 아무리 전문가라 해도 장애를 가지지 않은 사람이 보는 '차별은,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구제에 관해서는, 본래, 사법기관의 역할이지만, 엄격한 입증을 필요로 하고, 긴 시간과 경비 등의 부담을 피해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구제를 거부하는 것과 다름없는 경우도 많이 존재한다. 그리고 장애에 관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지 않은 일반의 제판관에 의해, 정당한 사실 인정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도 존재한다.

더욱이, 제판에 의한 판결에서는, 차별의 상태에 응해 유연한 해결을 도모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한다. 이와 같이 것을 고려하면, 제판절차에 이동하기 전에, 유연하고 간단한 준 사법적 틀로서 해결 수단을 준비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구제기관」을 생각할 경우 주된 문제는 두 가지 있다

하나, 사실의 규명이다. 예로서 시설 안에서 일어난 사건 등을 외부에서 조사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다. 따라서 이 구제 기관에 사실 조사의 권한이 법률상 보장되지 않으면 안 된다.

둘, 구제 방법이다. 단순한 조정만으로는 정말 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 조사권을 기반으로 일정의 사실이 명확히 되었을 경우, 시정 명령, 경고, 권고, 요망, 공표, 공소 제기 하는 것이 가능한 권능이 있지 않으면, 조정(중재)도 성립하지 않는 것이 된다.

[제4장] 장애를 가진 사람을 위한 지원기관

장애를 가진 사람이, 그 구제를 요구하고, 구제기관(제3장 참조)에 의해 수 속이나, 직접 상대와 교섭할 경우, 자기의 힘으로 하라고 말을 해도 그것은 곤란하다. 장애를 가지지 않은 사람에 있어서도, 많은 경우 타인의 힘을 빌리는 경우가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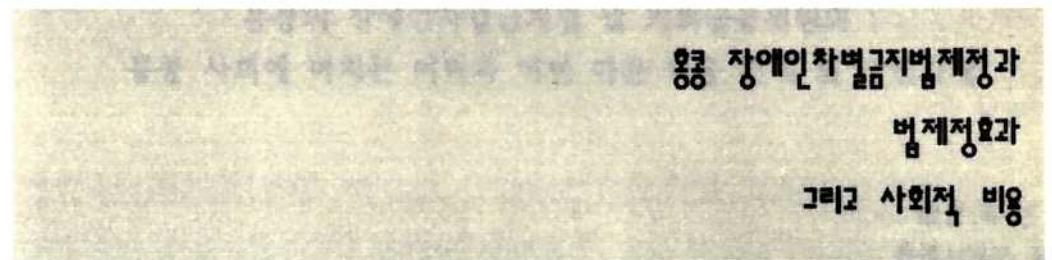
소송 등에 가져갈 경우, 많은 경우, 변호사라는 전문가를 사용한다. 그러나 장애를 가진 사람의 경우,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가 많고, 차별 사건의 경우, 사건이 해결되었다 해도 그것이 경제 이익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다.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 변호사로서는 사건 해결에 향한 노력에 비해 금전적인 보수의 적음에 수임하는 것을 주저하는 경우도 있다. 또 장애에 대해 이해가 적은 변호사도 많고, 보다 당사자의 입장에 변호 활동을 기대하는 것도, 형상에서는 곤란하다.

여기서,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국선 변호 제도가 있듯이,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차별사건에 관해서, 국가의 비용을 가지고 당사자를 지원하는 기관이 설치될 필요가 있다.

미국에서는, 이러한 기관으로 프로젝트·앤드·아도바카시라는 기관이 존재한다. 이러한 현실의 실현의 필요성으로부터 생겨난 제도이다. 권리의식이 약한 일본에서는, 미국 이상으로 그 필요성은 높다.

여기에서의 문제점은, 국가가 충분히 비용을 제공하는 것과, 이런 조직의 독자의 조사권이다. 이점은, 구제 기관의 곳에서 이야기 한 것과 같고, 증거의 많은 것을 상대가 가지고 있는 현상에서는, 이러한 조사권이 없으면 실직적인 권리옹호는 불가능하다.

주제발표 2



홍콩 장애차별금지법과 법제정효과 그리고 사회적 비용

홍콩의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기회균등위원회 :
홍콩 사회에 미치는 이익과 이에 따른 비용 분석 및 당면과제

요셉 쿡 킨 편
홍콩시립대 교수

들어가는 말

홍콩의 장애인 관련 법률

홍콩에는 장애인의 모든 권익을 대변하기 위해 제정된 통합법이 없는 상태이다. 하지만 이들을 위한 법이 홍콩 법 요소요소에 포함되어 있다.

장애인을 위한 법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법이 1996년 발효된 장애인차별금지법(Disability Discrimination Ordinance : DDO)이라 할 수 있다. 이 장애인차별금지법에는 “장애“의 법적 용어정의가 되어 있으며 종합적인 적용 범위와 독립 법으로서의 시행효력이 있다는 것이 잘 나타나 있다.

오늘 이 자리에선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기회균등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다루겠지만 아래의 장애에 관련된 특별법들이 있다는 것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법령487호), 내국세법(법령112호), 형법(법령200호), 형사소송법(법령221호), 법제위원회(법령542호), 정신위생법(법령136호), 건축법(법령123호), 자동차 법(제1등록세, 법령330호), 도로교통법(법령374호) 등이 이에 해당된다. 홍콩에서 시행되고 있는 장애에 관련된 특별법의 상세한 내용이 부록 1에 나타나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Disability Discrimination Ordinance : DDO)

-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한 법적 보호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 및 그 동료들이 입은 장애로 인하여 차별, 학대 및 모욕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본 법의 주요 요소는 아래의 설명과 같다.

- 장애(Disability) : 신체적 또는 정신적 기능의 전부 또는 일부 상실 ; 신체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실 ; 질병의 원인이 되는 유기체의 체내존재 (HIV 등); 신체 일부분의 기능부전, 기형 또는 변형 ; 부조 또는 기능부진이 없는 사람과는 다른 학습효과를 가져오는, 개인의 학습상의 어려움을 야기하는 부조나 기능부전 ; 현재 존재하는 장애 ; 과거에 존재하였으나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장애 ; 향후 발생 가능한 장애를 모두 포함한다. 따라서 이상의 경우에 해당할 경우 본 장애차별금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 동료(Associates) : 장애를 가진 당사자의 배우자, 친인척, 보호자 등 생활을 같이 하는 사람 또는 체육 단체나 레크레이션 파트너를 포함한다.
- 차별(Discrimination) : 차별에는 직접적 및 간접적 차별이 있다. 직접 차별이란 장애를 입은 사람이 그 장애를 입은 이유만으로 같은 조건 하에서 다른 사람보다 분리한 대우를 받는 것을 말한다. 간접 차별이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조건이 실질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반대로 적용되는 결과를 초래 할 때를 말한다.
- 희롱(Harassment: 학대) : 장애로 인해 상대방의 원치 않는 행동으로 인해 위협을 느끼거나 욕설, 조롱 등에 의해 모욕감을 느끼는 것을 말한다.
- 비방(Vilification) : 장애에 대해 여러 사람 앞에서 증오를 나타내거나 심각한 경멸 또는 심한 조롱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예를 들면 누군가가 공개적으

로 장애를 가진 사람은 사회에서 쓸모없는 짐 밖에 되지 않는다고 비방을 했을 때.

- 보호의 범위(Scope of protection) : 장애인이나 그 동료들은 직장, 학교, 공공장소의 출입, 처소의 접근, 재화, 서비스 및 시설의 이용, 변호사 개업, 스포츠 활동 등의 범위에서 보호를 받는다.

기회균등위원회(THE EQUAL OPPORTUNITIES COMMISSION)와 장애인차별금지법(THE ENFORCEMENT OF DDO)의 시행

균등기회위원회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성차별금지법, 가족차별금지법 등의 시행과 그에 따른 사후관리 기관으로 법적근거를 가지고 조직되었다. 법적으로 구성된 기구로서 그 하는 일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다. 정부의 예산만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업무상의 독립성을 유지하며 때로는 정부의 뜻에 맞지 않는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따라서 정부를 견제하는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셈이다. 정부의 최고 책임자가 판단에 따라 각 위원을 임명한다. 위원은 보수 없는 봉사 직이며 위원장에게는 정부 고위 간부 수준의 대우를 해준다.

균등기회위원회가 주로 하는 일은 고충, 전략적 소송, 정식 수사, 모범사례발간, 연구 활동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통합 조정하는 일이다.

고발 조정 및 중재

장애인차별금지법에 해당되는 고발이 균등기회위원회로 접수되면 피해자와加害者 간에 중재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해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다. 화해란 균등기회위원회의 직원이 중재자가 되어 쌍방간의 문제가 해결 되도록 하는 자발적인 과정에 속한다. 만약 쌍방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중재 결과를 서면에 나타내고 쌍방이 서명을 하면 끝난다.

중재 합의 내용은 합의 사항의 일부이며 쌍방에 구속력을 지닌다. 합의의 형태는 사과, 보상 등 시정명령 조치 등 다양한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 균등기회위원회가 개입하여 서로 평화적인 합의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주어야 한다.

만약 고발된 사건이 해결되지 않고 법적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을 때는 EOC에 적절한 법적절차에 관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도움의 형태로는 법률상담, EOC 변호사 선임, 외부 변호사 주선 기타 EOC 가 판단하는 적절한 도움 등을 들 수 있다. 하지만 이때 EOC가 할 수 있는 일은 판례에 따른 명확한 사건에만 도움을 줄 수밖에 없을 것이다. 1998년부터 2002년 사이에 장애인차별금지법(DDO) 관련 접수된 질의 사항과 고발에 대한 통계가 아래 도표 1에서 5까지에 나타나 있다.

도표 #1

	1998	1999	2000	2001	2002
총 질의 건수	955	864	1541	1881	1902
총 고발 접수 건수	356	227	367	429	356
조사 및 조정 건수	264	192	339	416	341
고발 사후관리 건수					
차별광고 21001	2	1	0	0	1
처소 접근, 재화 및 서비스	90	34	28	13	14
처리된 고발 건수	422	369	494	636	556

자료제공 : 홍콩 균등기회위원회(EOC, 2003)

도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1998년과 2002년 사이에 질의 건수가 계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이는 그만큼 사람들이 균등기회위원회(EOC)와 친숙해 졌다는 것을 보여 준다. 고발접수 건수에 있어서는 각 년도별 차이는 다소 있었지만 변화폭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또는 조정 의뢰된 건수로는 2001년 416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가 2002년에는 341건으로 급격히 떨어졌다.

도표 #2. 1998년과 2002년 사이에 EOC에서 처리한 직장 내에서 일어난 조사 및 중재 접수 현황

		수사 중 또는 추적불능/ 중재진행		수사중단		중재시도	
직장내 계		수사중/중재	수사불능(1)	조기종결(2)	기타(3)	중재성공	중재실패
1998	193	69	0	31	43	17	33
1999	178	67	0	3	56	30	22
2000	290	137	0	7	79	30	37
2001	415	128	0	3	227	28	29
2002	363	100	2	3	160	52	46

자료출처 : 균등기회위원회(EOC, 2003)

도표 #3. 1998년과 2002년 사이에 EOC에서 처리한 직장 이외에서 일어난 조사 및 중재 접수 현황

		수사 중 또는 추적불능/ 중재진행		수사중단		중재시도	
직장내 계		수사중/중재	수사불능(1)	조기종결(2)	기타(3)	중재성공	중재실패
1998	117	46	0	11	19	35	6
1999	129	44	1	0	21	51	12
2000	161	65	1	0	30	44	21
2001	204	66	0	0	62	62	14
2002	172	43	0	1	62	32	34

자료출처 : 균등기회위원회(EOC, 2003)

- 주 : 1. 응답자의 신원이 밝혀지지 않았거나 행방 추적이 불가능한 경우
 2. 조사를 하는 기간 중에 문제가 해결되어 고발 해결을 더 이상 진행
 시키고 싶지 않은 경우
 3. 불법적 행동이 아니라는 이유 또는 고발을 처리할 의사가 없거나 또
 12개월이 경과하여 조사가 중단된 경우. 고충 자체가 사소하거나,

귀찮거나 잘못 이해됐거나 또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4. 화해 노력이 있었으나 해결하지 못한 경우

도표 #4. 화해 노력의 결과(직장과 그 외의 지역 별도)

연도	중재시도(직장 내)			중재시도(직장 외)		
	중재(%)	중재실패(%)	계(%)	중재(%)	중재실패(%)	계(%)
1998	17(34)	33(66)	50(100)	35(85)	6(15)	41(100)
1999	30(58)	22(42)	52(100)	51(81)	12(19)	63(100)
2000	30(45)	37(55)	67(100)	44(68)	21(32)	65(100)
2001	28(49)	29(51)	57(100)	62(82)	14(18)	76(100)
2002	52(63)	46(47)	98(100)	32(48)	34(52)	66(100)
계	157(48)	167(52)	324(100)	224(73)	87(27)	311(100)

자료출처 : EOC(2003)

도표 #5. 중재 노력의 결과(종합)

중재시도(종합)			
연도	중재(%)	중재실패(%)	계(%)
1998	52(57)	39(43)	91(100)
1999	81(70)	34(30)	115(100)
2000	74(56)	58(44)	132(100)
2001	90(68)	43(32)	133(100)
2002	84(51)	80(49)	164(100)
계	381(61)	254(39)	635(100)

자료출처 : EOC(2003)

직장에서의 중재 노력

직장에서의 고발 건수는 1999년도에 178건으로 가장 낮았으며 반대로 2002년에는 415건으로 가장 높았다. 1998년 이후 2002년 까지 뚜렷한 증가 추세에 있다는 것은 사람들이 균등기회위원회(EOC)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점차적으로 더 잘 알게 되었고 2002년에 들어와서 갑자기 떨어진 이유는 유래 없는 실업율과 경기 부진으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 절대 수치의 증가는 3백3십만의 근로자를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큰 숫자는 아니다. 중재 성공률은 해당 기간 동안 직장과 직장 외 경우 공히 변동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직장의 경우 5년 평균 성공률은 48%로 직장 외의 경우의 성공률 61% 보다 훨씬 낮다. 급격히 하락한 홍콩의 경기와 1997년 이전 3%에 머물던 실업률이 최근 유래 없이 8.7% 까지 치솟은 점을 감안해 보면 이러한 통계수치를 차후 다시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전략적 소송

균등기회위원회(EOC)는 소송 내용이 아주 복잡하게 얹혀 있거나, 판례에 비추어 법원의 법리 해석이 애매하다거나 법원칙에 따른 공익이 걸려 있다고 판단 될 때만 소송을 도와준다. 아래에 소개하는 두건의 승소 건이 이러한 균등기회위원회(EOC)의 전략적 소송 기능을 잘 설명해 준다. 그 첫 번째는 직장에서 억울하게 해고된 세 사람이 소방서와 관세청을 상대로 고소한 사건인데 그들 친척 중에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해고되었다. 사실 친척과의 관계를 이외에는 이 세 사람의 고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거절 기준에 대한 고용주의 사유가 너무 확고했기 때문에 법적 해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 두 번째 경우는 가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정식으로 사과를 하라는 명령이었다. 물론 사과를 한다고 해서 어떤 경제적인 가치를 얻자는 것을 아니지만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중요한 사회적 가치를 찾는데 있다.

공식수사 기능

균등기회위원회(EOC)의 또 다른 주요 기능은 시스템상 차별에 대한 공식 수사를 담당하는 일이다. 이 경우 균등기회위원회(EOC)가 잘못된 것을 바로 잡도록 권장하고 또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한 모범사례도 만들어 낼 수 있다. 시스템과 정책을 바꾸게 되면 그 영향력은 대단한 힘을 발휘하여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줄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기능으로 인해 정부 차원에서는 보다 책임감 있는 업무 체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아직까지는 장애차별금지법 관련 균등기회위원회(EOC)의 공식 수사 기록은 없다.

모범판례집 발간

균등기회위원회(EOC)는 장애인차별금지법(DDO) 관련 각 분야의 모범판례집을 발간하여 관계 부처에서 실무 행동지침서로 사용하도록 하여 규칙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 지침은 새로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장애인차별금지법(DDO)에 관련된 모든 당사자들이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보조 자료이다. 만약 이 지침을 어겼을 경우 장애인차별금지법(DDO)에 의한 소송이 걸렸을 경우 법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된다. 홍콩 내에서 상당한 파급 효과를 지닌 지침 두 가지를 아래에 소개하고자 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DDO) 산하 교육 지침

장애인차별금지법(DDO) 산하 교육 지침은 다각도의 의견 수렴을 거친 후 제정되었다. 이 지침은 홍콩이나 중국정부 산하 모든 교육기관이 교육 관련 정책 결정시 적용된다. 본 지침은 또 홍콩 내에서 실시하는 모든 교육 프로그램을 통합 조정하는 일을 도와준다. 이 지침은 통합 교육 안내서가 아니라 장애인차별금지법(DDO)에서 요구하는 법을 준수하도록 하는 안내서라고 할 수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균등기회위원회

고용법은 고용과 관련된 제반 문제에 장애인차별금지법(DDO)을 적용하기 위함이며 국민의 기본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적 화목을 도모하고 인적자원의 효율적인 운용과 기업의 성공적인 운영(균등기회위원회(EOC), 2002b)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법은 모든 기업에 적용되며 장애인을 차별했을 시 고용주 및 고용인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용주는 이 법을 준수했다는 사실로 법정에서 자신을 변호 할 수 있다. 이 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특별한 행동을 차별로 규정하고 있다. 즉, 장애인에게 불공정한 대우를 하거나, 회통(인격 모독 발언 등), 장애인차별금지법(DDO) 고소인을 따돌리는 행위, 비방(장애인을 상대로 공개적으로 적대감을 표현하는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장애인차별금지법(DDO)나 고용법에 대한 사례가 여러 법정에서 다루어진 바 있으며 대중 매체에 보도 된 바 있다.

교육과 연구 기능

균등기회위원회(EOC)는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일반 대중에게 장애인차별금지법(DDO)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주로 TV 다큐멘타리, 대중 교육 프로그램 실시를 위해 엔지오(NGO)에 재정지원, 민간 기업과의 공동 협력체계를 유지해 나가고 있다. 그밖에 정부 기구와 또 비정부 기구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대화창구를 항상 열어 놓고 있다.

균등기회위원회(EOC)가 하는 일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교육훈련 및 컨설팅 업무이다. 지난 2002년에는 7000명에게 교육훈련을 실시하였고 7개의 기업체에 근무하는 20,000명의 종업원과 28,000명의 학생들을 위해 상담을 해 주었다. 또 중국어와 영어로 된 웹사이트를 운영하여 월 910,000건 이상이 접속하여 원하는 정보를 얻고 있다.

균등기회위원회(EOC)는 또한 차별에 관한 주요 사안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

거나 타 기관에 위탁하기도 한다. 그 예로는 보험회사의 사례를 연구 검토하여 모범 약관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홍콩사회에 미치는 사회적 편익과 비용

사회적 편익

아직까지 장애인차별금지법(DDO)과 균등기회위원회(EOC)가 홍콩에 미치는 사회적 편익과 비용을 수치로 나타내는 구체적인 방법이나 연구 실적이 없는 실정이다. 하지만 오늘 이 토론을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는 질적 수치는 얼마든지 찾아 볼 수 있는데 이를 대략 국제적인 관점, 자국내의 관점, 개인의 관점 이 세 가지 다른 수준에서 분석해 볼 수 있다.

우선 국제적인 면을 살펴보기로 하자. 홍콩은 명실상부한 국제도시로써 금융이나 비즈니스의 중심지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으며 세계 모든 투자가들이 모여드는 곳이며 장애인 차별행위가 불법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비한 효과적인 법적 장치도 이미 마련되어 있는 셈이다.

홍콩 정부는 이미 국제사회에서 UN 현장(UN 1993), 비와코 새천년 행동계획안(Biwako Millennium Statement, UNESCAP, 2002)를 앞장서서 준수하는 나라로 정평이 나 있기도 하다. 홍콩은 또한 장애인 인권에 관한 국제 현장(Ad Hoc Committee, 2003; UNESCAP, 2002)에 나타난 유엔(UN) 정신 홍보 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제조와 무역에 있어서 차별 행위는 세계무역기구(WTO)에서 금지되어 있고 국제도시를 지향하고 있거나 국제무역의 성실한 파트너가 되고자 하면 각종 차별행위를 없애나 가야만 한다.

자국내의 측면을 보면 이 법의 제정으로 인해 인간의 기본권을 존중하고 장벽 없이 다양성과 평등을 상호 존중하는 포용력 있는 사회로 만들어 나갈 수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DDO)은 장애인으로 하여금 교육에 있어서 균등한 기회

를 보장 받아 종합적인 교육혜택을 누리게 하며 개인의 생활이 윤택해지게 하며, 사회복지 시설의 의존도를 줄여 공공비용을 절감하게 하며 나아가서 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준다. 이런 모든 면이 개선되게 되면 장애인 전체의 건강이 증진되어 공공 보건비용 의존도를 줄여 나갈 수 있게 된다.

개인 측면을 보면 이 법으로 인해 장애인 개인 각자의 잠재력과 능력을 배가 시켜 사회와 경제 전반에 걸쳐 기여할 수 있게 하며 동시에 그 가족들의 잠재력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한다. 이 법으로 인해 장애인 자신의 자존심을 회복하게 하고 생활에서 자부심을 느끼게 만들 뿐만 아니라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하게 한다.

사회적 비용

장애인차별금지법(DDO)를 집행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중 직접적이고 분명히 드러나는 비용은 균등기회위원회(EOC)에 편성된 공적자금이다. 따라서 간접적인 재정비용은 홍콩 법원에서 발생되는 비용과 기타 여러 부서에서 발생되는 각종 법률비용이 된다. 하지만 이러한 비용은 전반적인 공적자금의 규모나 법률 비용에 비해 매우 미미한 액수에 지나지 않는다.

또 이러한 비용 정도는 홍콩 정부에서 충분히 부담할 수 있으며 더군다나 최근 정부가 균형 있는 예산 편성을 위해 기울이는 공적자금 축소 노력에 편승하여 차츰 줄어드는 추세에 있다.

계량화 할 수 없는 사회적 비용을 따로 뽑아내기는 무척 어렵다. 몇몇 개인이 장애인차별금지법(DDO)를 남용하여 회사 운영을 어렵게 만든 경우가 있다는 비판의 소리도 있어왔고 균등기회위원회(EOC)가 전략적 소송제기 권한을 이용하여 너무 어깨에 힘이 들어가 정부 부처나 기업들 그리고 사회 화합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일부 정치권의 미움을 사기도 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장애인차별금지법(DDO)과 균등기회위원회(EOC)가 사회를 통합하기보다 도리어 갈라놓는다는 평을 하기도 한다.